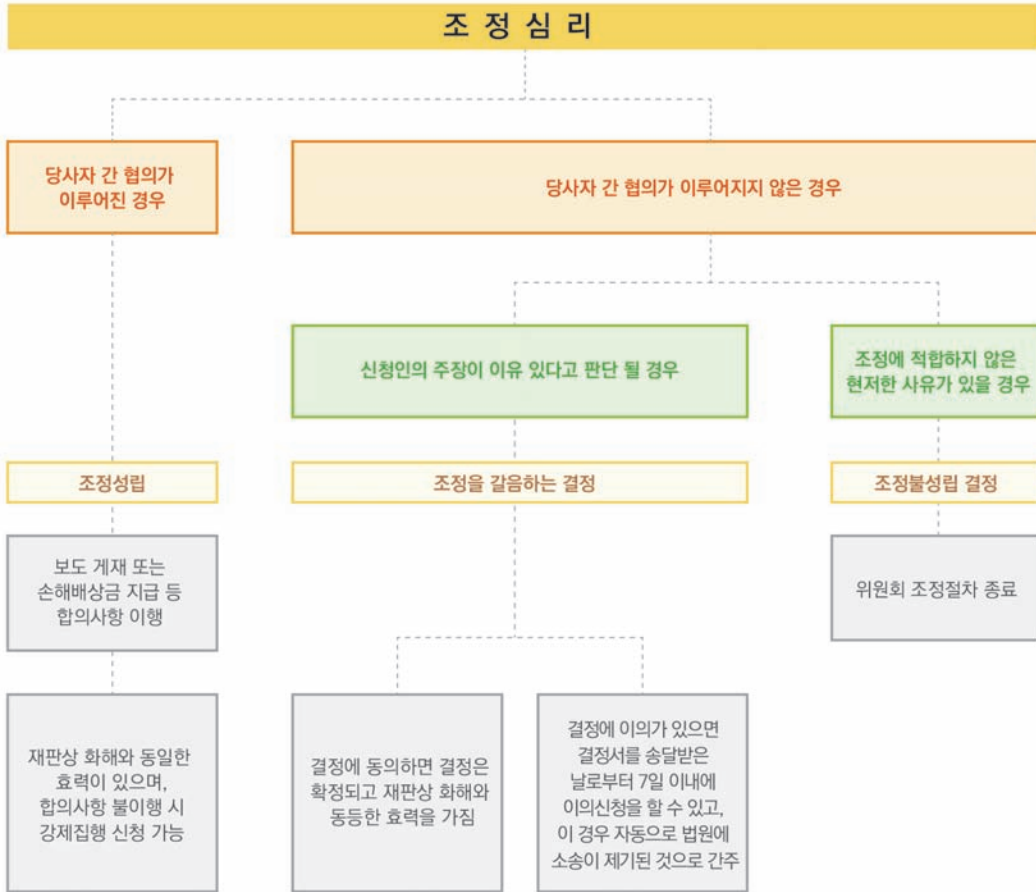


2020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조정절차 흐름도



사례집 용어 설명

■ 언론조정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대상매체]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 **중재**는 피해자와 언론사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따르겠다는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함

■ 청구권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음

▮ 반론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문 형태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가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이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 인격권 침해 유형

■ 명예훼손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됨

■ 초상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됐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함

■ 재산권 침해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 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권 침해가 인정됨

■ 사생활 침해

사생활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언론이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

■ 음성권 침해

목소리에 대한 권리로서, 기자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함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됨

■ 조정사건 처리결과 종류

■ 조정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언론사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취지를 수용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이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 신청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 조정불성립결정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조정절차 종료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 등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각하

신청기간을 넘겨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 취하

조정과정 중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Contents

■	제1부 언론조정현황	17
■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25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27
	사례 1 시의성을 요하는 선거보도 분쟁에서 신청인의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것으로 취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한 사례 2020전북조정17·18 / 정정·반론청구	28
	사례 2 신청인이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회사의 상품을 타 업체가 제작, 수상한 것처럼 작성한 보도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취한 사례 2020서울조정422 / 정정청구	30
	사례 3 신청인이 파업 당시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고,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수차려 배포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2020서울조정515·516 / 정정·손배청구	32
	사례 4 이미 정정보도가 게재된 바 있으나 보도내용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취지와 다르고 사전에 문안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정정보도를 다시 방송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2020대구조정41 / 정정청구	34
	사례 5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발표가 ‘가짜 뉴스’ 논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832/833 / 각 정정청구	36
	사례 6 제보내용을 신뢰하여 보도하였으나 조정 심리 중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신문 지면 1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례 2020경남조정41·42/43·44 / 각 정정·손배청구	38

Contents

사례 7	사설인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경기조정231·232 / 정정·손배청구	41
사례 8	신청인 대학의 청소용역원 해고, '갑질'사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관계 부분은 정정, '갑질'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20서울조정1902·1980/1903·1981 / 각 반론·정정청구	43
사례 9	SNS 게시물만으로 공인인 신청인이 문제성 발언 등을 했다고 단정보도한 데 대해 게시물 작성자가 기억의 오류를 시인함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1911·1912/1913·1914 / 각 정정·손배청구	46
사례 10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례 2020부산조정39·40 / 정정·손배청구	48
사례 11	지역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고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2020대전조정41·42 / 정정·손배청구	50
사례 12	중재부가 보도문 게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보도문 확인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2020서울조정2236·2237/2238·2239 / 각 정정·반론청구	53
사례 13	체육시설 시스템을 시공하는 신청인의 시공 소재가 인체 유해성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학술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572·2573 / 정정·반론청구	55
사례 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간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결정한 사례 2020서울조정2798/2799 / 각 정정청구	57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59

- 사례 15** 기사에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과 화면구성 등으로 유추되는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한 사례
60

2020부산조정4 / 정정청구
- 사례 16**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기사 부제목에도 신청인 측 반론을 담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63

2020서울조정276/277, 278 (병합) / 정정, 정정, 반론청구
- 사례 17** 동일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신문 지면과 인터넷신문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문안을 다르게 하여 합의한 사례
66

2020서울조정402/403 / 각 반론청구
- 사례 18** 공적 관심사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 정정이 아닌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69

2020대구조정33 / 정정청구
- 사례 19**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했으나 신청인의 별도 보도 필요 소명에 따라 중재부에서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72

2020충북조정11·12·13 / 정정·반론·손배청구
- 사례 20** 조정신청 전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는데, 해당 반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74

2020서울조정1473/1474 / 각 정정청구
- 사례 21** 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책자 납품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갑질”, “뒷돈”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76

2020강원조정32·33/34·35 / 각 정정·손배청구

Contents

사례 22	제보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담긴 보도에 대해 중재부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20서울조정1969-1970 / 정정·반론청구	79
사례 23	신청인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대신 방송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102, 2020서울조정2103 (병합) / 각 정정청구	81
사례 24	중재부의 권유로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3개 매체 뉴스면 초기화면에 각각 별도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효과를 제고한 사례 2020서울조정2585/2586/2587 / 각 정정청구	83
사례 25	지역방송 토론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경남조정89-90/91-92/93-94 / 각 정정·손배청구	85
사례 26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계약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한 비판에 보도내용이 집중되고 반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20광주조정79 / 반론청구	88
사례 27	반론권 부여를 위한 언론사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을 인정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 2020전북조정100 / 반론청구	91
사례 28	신청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반론을 충분히 신지 않아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강원조정40/41 / 각 반론청구	93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95

- 사례 29** 신청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84·285/286·287 / 각 추후·손배청구 96
- 사례 30**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게재하여 신청을 취하한 사례
 2020서울조정1103 / 추후청구 98
- 사례 31** 신청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에 한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20서울조정1840·1841·1842·1843/1844·1845·1846·1847 / 각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100
- 사례 32**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충북조정41·42 / 추후·손배청구 102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105

- 사례 33**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만을 근거로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87 / 손배청구 106
- 사례 34** 지역 '맛집'소개 프로그램에서 식사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과 기사 수정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307·308, 2020서울조정309·310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 108

Contents

사례 35	지자체 체육회장 후보자인 신청인을 여러 차례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반론을 충분히 신지 않았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i>2020서울조정442·443 / 정정·손배청구</i>	110
사례 36	코로나 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i>2020서울조정472, 2020서울조정622 (병합) / 각 손해청구</i>	114
사례 37	‘다큐 에세이’ 프로그램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취하한 사례 <i>2020대전조정8/9 / 각 손해청구</i>	115
사례 38	보도 내용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를 방송하여 업체의 상호권 및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사과보도,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i>2020서울조정564/623, 2020서울조정565/624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i>	116
사례 39	근거 없이 신청인 업체를 비윤리적인 회사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결정한 사례 <i>2020서울조정666·667 / 정정·손배청구</i>	118
사례 40	면 마스크 교체용 필터가 불량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업체의 쇼핑물 및 제품 이미지를 사용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i>2020서울조정843·844, 2020서울조정845·846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i>	120
사례 41	신청인들의 조정신청이 불성립결정된 것이 중재부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i>2020광주조정46·47/48·49 / 각 정정·손배청구</i>	122



<p>사례 42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신청인들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2020서울조정1899 / 손해청구</p>	125
<p>사례 43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과 기사수정을 결정한 사례 2020서울조정1923 / 손해청구</p>	126
<p>사례 44 사기혐의로 고소된 P2P 업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금흐름 도표에 기재된 신청인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한 데 대해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283 / 손해청구</p>	128
<p>사례 45 신청인인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 학비, 월세 송금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2020서울조정2294·2295 / 정정·손배청구</p>	129
<p>사례 46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는 일반 참석자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20부산조정51 / 손해청구청구</p>	131
<p>제5장 기사 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133</p>	
<p>사례 47 온라인상 공개된 영상을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데 대해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66·267/268·269 / 각 정정·손배청구</p>	134
<p>사례 48 신청인의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기사화하면서 사망 이유를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광주조정20/21 / 각 손해청구</p>	136

Contents

사례 49	3년 전 동의 없이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다시 게재한 보도에 대해 기사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1435 / 손해청구	137
사례 50	제주의 해수욕장을 걷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한 데 대해 블로그, SNS 등에 해당 사진이 게재될 경우 피신청인이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1431 / 손해청구	138
사례 51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집값 담합 관련 단속을 피해 영업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변조한 중개사의 음성과 사무소 내부를 공개한 방송에 대해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직권결정을 한 사례 2020서울조정1612/1613 / 각 손해청구	140
사례 52	기사와 함께 '오리발'이미지를 게재해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한 데 대해 이미지 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2020전북조정77 / 정정청구	141
사례 53	신청인 업체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본문을 수정하고 기사 하단에 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726·2727 / 정정·손배청구	143
사례 54	미인선발대회 참가자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여 취하한 사례 2020서울조정2654 / 정정청구	146



제6장 기타 사례 147

- 사례 5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이름만 빼고 보도한 데 대해 언론사의 취재·편집의 자유와 허위보도가 아님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2020서울조정20·21 / 정정·손배청구 148
- 사례 56**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상당 분량 보도되었음에도 이를 요약한 형태의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기각된 사례
 2020서울조정129 / 반론청구 149
- 사례 57** 신청인 단체와 법적 분쟁 중인 전 회장을 신청인의 대표자로 보도한 데 대해 PR보도 게재와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50, 2020서울조정251 (병합) / 각 정정청구 151
- 사례 58** 신청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사과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399 / 손배청구 153
- 사례 59** 학교 몰카 범죄 용의자의 특정 직군을 명시한 보도에 동일 직군인 신청인이 반론청구를 한 데 대해 보도와 신청인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2020경남조정51 / 반론청구 155
- 사례 60** 주민대표위원장의 '갑질'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해당 반론보도를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게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경기조정285 / 정정청구 156
- 사례 61** 신청인과 소송 중인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기고문을 게재한 데 대해 반박 기고문 게재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084·2085·2086 / 정정·반론·손배청구 159

Contents

사례 62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의 인터뷰를 담은 후속보도를 신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2681/2682 / 각 정정청구

161

부록: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63



제 **1** 부

언론조정현황

제1부 언론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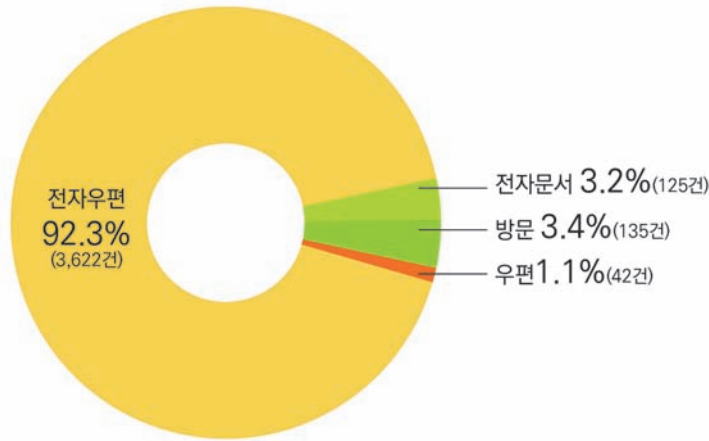
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20년 총 3,924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고, 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방법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E-mail) 3,622건(92.3%), 위원회 사무실 방문 135건(3.4%), 전자문서¹⁾ 125건(3.2%), 우편 42건(1.1%) 순이었다.

전자우편(E-mail) 및 전자문서를 통한 사건접수 비율은 2018년 91.9%, 2019년 94.8%, 2020년 95.5%를 기록해 비대면 방식 온라인 접수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 2020년도 중재 신청사건은 접수되지 않음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년에 가장 빈번하게 접수된 청구는 정정보도청구였다. 정정보도청구는 총 3,924건 중 1,983건으로 전체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했고, 이어 손해배상청구 1,132건(28.8%), 반론보도청구 695건(17.7%), 추후보도청구 114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권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것은 반론보도청구인 것으로 집계됐다(73.8%). 그밖에 추후보도청구 71.2%, 정정보도청구 68.5%, 손해배상청구 62.9%의 순으로 피해구제율을 기록했고, 2020년 사건 전체의 피해구제율은 67.8%이었다.

1) 인터넷에서 전자신청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



표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983	630	95	51	440	(5)	109	8	548	102	68.5
반론	695	212	19	11	115		109	1	201	27	73.8
추후	114	35	4	3	25		2	1	40	4	71.2
손배	1,132	368	48	34	311	(6)	55	24	240	52	62.9
계	3,924	1,245	166	99	891	(11)	275	34	1,029	185	67.8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text{※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2,187건, 단체는 1,737건을 각 청구했다.

개인 청구사건 중 66.6%의 사건이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 전 보도거제,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이 가장 많았고(608건, 27.8%), 조정성립 597건(27.3%), 조정불성립결정 507건(23.2%)건 등의 순으로 종결됐다.

단체 청구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청인 유형은 일반기업체 등 회사로, 739건이 집계됐다. 뒤를 이어 일반단체 375건, 지자체·공공단체 292건, 교육기관 125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단체별 피해구제율은 지자체·공공단체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국가기관 79.4%, 회사 69.5%, 일반단체 64.6%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기관이 청구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52.4%로 가장 낮았다.

표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개 인	2,187	597	83	54	507	(6)	215	30	608	93	66.6	
단체	국가기관	108	61	7	7	8		1		17	7	79.4
	지자체·공공단체	292	149	25	12	22			1	62	21	81.1
	일반단체	375	157	18	10	92	(5)	30	3	41	24	64.6
	종교단체	98	26			35		3		28	6	56.8
	회사	739	235	29	14	175		25		232	29	69.5
	교육기관	125	20	4	2	52		1		41	5	52.4
계	3,924	1,245	166	99	891	(11)	275	34	1,029	185	67.8	

신청인 유형 중 단체를 제외하고 개인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기타(시민활동가, 학생, 알 수 없음 등) 유형의 청구건수(63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자(296건), 전문직종사자(288건), 정치인(28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사자에는 법조인과 의료인,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정당정치인,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타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신청인 개인직업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매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치인	281	98	6	12	79	(2)	11		68	7	64.4
공무원	191	52	14	4	59		11		42	9	60.0
언론인	98	23	4	4	33		17		12	5	48.1
종교인	47	20		3	19				4	1	51.1
전문직종사자	288	36	3		84		16		148	1	68.8
예술계종사자	12	6			3		1		1	1	63.6
교육자	296	130	37	10	55		5	3	41	15	72.2
개인사업가	208	59	3	13	60	(4)	11		37	25	52.3
회사원	128	48	2	1	30		7	2	25	13	63.0
기 타	638	125	14	7	85		136	25	230	16	77.4
계	2,187	597	83	54	507	(6)	215	30	608	93	66.6

4.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2,102건, 53.6%). 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596건(15.2%), 신문 506건(12.9%), 방송 465건(11.9%), 뉴스통신 247건(6.3%)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의 비중은 2018년 77.4%, 2019년 74.2%, 2020년 75.1%로, 계속해서 전체 사건의 70%를 웃돌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다.

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은 '기타'로 분류된 매체가 100.0%로 가장 높았으나 표본이 매우 적어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밖에 뉴스통신 75.8%, 인터넷신문 70.7%, 신문 6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 1. 1. ~ 2020. 12. 31.)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506	220	29	18	130	(4)	12	1	81	15	67.7
방 송	465	158	23	13	138		28	5	79	21	60.2
잡 지	4	2		1	1						50.0
뉴스통신	247	82	10	6	26		24	4	74	21	75.8
인터넷신문	2,102	647	75	45	432	(7)	158	20	631	94	70.7
인터넷뉴스 서비스	596	136	29	16	164		53	2	162	34	60.4
기 타	4							2	2		100.0
계	3,924	1,245	166	99	891	(11)	275	34	1,029	185	67.8

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년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으로, 전체 사건의 96.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예훼손 사건 3,778건 중 1,224건(32.4%)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됐고, 1,168건(30.9%)이 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이 중 997건(26.4%)은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조정불성립결정 834건(22.1%), 기각 265건(7.0%) 순으로 처리됐다.

한편 침해 유형 중 초상권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82.1%)을 기록했다.

표 6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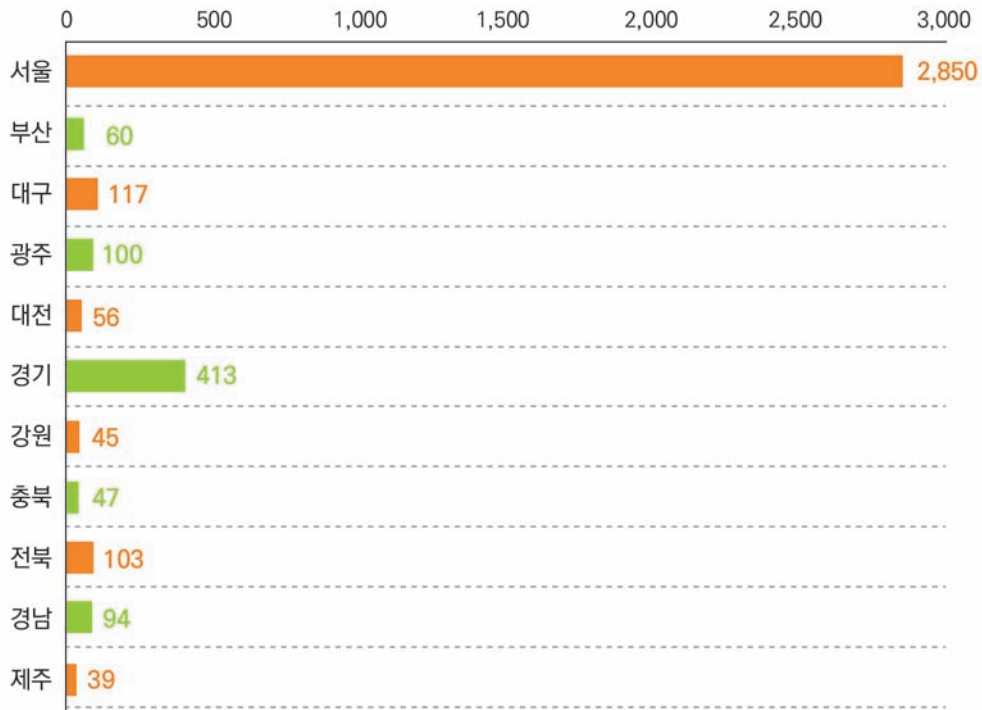
(2020. 1. 1. ~ 2020. 12. 31.)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778	1,224	157	98	834	(11)	265	32	997	171	68.6
초상권 침해	45	11	5	1	6		6		16		82.1
음성권 침해	6		2							4	33.3
성명권 침해	12	2			6			2	2		40.0
사생활 침해	7	2	2		1					2	57.1
재산상 손해	68	3			43		3		13	6	24.6
기 타	8	3			1		1		1	2	57.1
계	3,924	1,245	166	99	891	(11)	275	34	1,029	185	67.8

6.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2020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정건수 3,924건 중 서울 8개 중재부가 2,850건(72.6%), 지역의 10개 중재부는 1,074건(27.4%)을 접수·처리했다. 지역중재부 가운데 경기중재부가 가장 많은 413건(10.5%)을 처리했고, 이어 대구중재부 117건(3.0%), 전북중재부 103건(2.6%), 광주중재부 100건(2.5%) 순으로 조정사건처리가 이루어졌다.

표 7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7.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년 손해배상청구 1,132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38건(3.4%)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5천 원부터 최고 1,584억 5천만 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청구액의 평균은 약 4억 8천만 원이고, 중앙액은 1,500만 원이다.

조정액은 최저 1만 원, 최고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조정액 평균은 약 400만 원으로 2019년 약 480만 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2019년 조정액 평균에서 합의간주된 조정사건의 최고 조정액(1억원)을 제외한 평균 조정액인 약 255만 원과 비교하면 100만 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26건(68.4%), 초상권 침해 9건(23.7%), 성명권 침해 1건, 사생활 침해 2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8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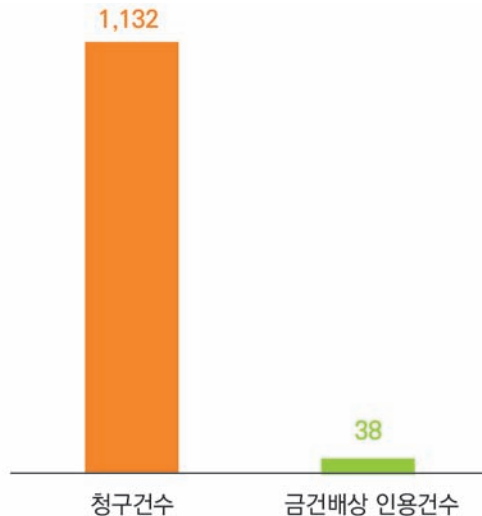


표 9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20. 1. 1. ~ 2020. 12. 31. /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5,000	158,450,000,000	481,480,644	15,000,000

표 10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0. 1. 1. ~ 2020. 12. 31. /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10,000	20,000,000	4,009,394	1,000,000

표 11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표 12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0. 1. 1. ~ 2020.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26	10,000	20,000,000	5,473,182	3,000,000	3,000,000
초상권 침해		9	300,000	2,000,000	887,500	1,000,000	1,000,000
성명권 침해		1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사생활 침해		2	500,000	4,000,000	2,250,000	2,250,000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제5장 기사 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2020전북조정17·18 / 정정·반론청구

시익성을 요하는 선거보도 분쟁에서 신청인의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것으로 취하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 다량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문자를 다량 발송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지인에게 발송한 것이며 예비후보 등록 진행상황 등을 공유한 것인데 마치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해당 문자는 B후보가 친인척, 지인 등에게 예비후보 등록 진행상황과 소문을 송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다량 유포한 것은 아니다.
- 당사자 확인 없이 마치 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되어 유감이다.

■ 조정결과

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도자료를 보내오면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A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7명의 C정당 입지자 가운데 4명을 부적합한 것처럼 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량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는 C정당 7명의 입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적고 엄지로 표시했다. [중략]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며 “만일 입후보 예정자가 이러한 문자를 보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B / A군수 예비후보가 물과 시장, 광장을 기본 공약으로 제시했다.

B예비후보는 22일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는 물과 시장, 광장 등 3대 기본 요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B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A군은 물은 있으나 깨끗하지 않고 시장은 있지만 재래시장 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 A군에는 광장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B예비후보는 “3가지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A군이 살아날 수 있다”며 “군수가 되면 이를 기본으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했다.

먼저 현재 공사 중인 시장 앞 아파트단지 하단을 평탄작업하고 쌍다리~터미널 구간의 하천을 복개해 A군의 중심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B예비후보는 “중심 광장은 평소 농산물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며 “A군의 모든 축제와 행사는 중심광장에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D담 물을 A천에 일정량 흐르도록 조성 △F둘레길 조성 △숙박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B예비후보는 “A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A군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경영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중앙과 폭넓은 인맥을 가진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B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소수의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진행상황을 알린 것인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돼 오해를 사게 됐다”면서 “누구를 음해하려는 행위는 아니었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2 2020서울조정422 / 정정청구

신청인이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회사의 상품을 타 업체가 제작, 수상한 것처럼 작성한 보도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A사 상품의 사진 등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국내 B사가 제작했으며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B사가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A사의 홈페이지에서 복사한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B사가 제작·수상한 것처럼 허위보도 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B사가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대상보도에서 사용한 상품 사진은 독일 A사의 상품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심리 개최 전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조정대상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디자인 어워드에서 B사가 수상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 사건 조정은 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B사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는 '2020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 명품 상품 부문에서 우수 상품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또 한 번 국제적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디자인과 편의성을 인정받은 것.

독일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디자인 협회가 1969년 제정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까다로운 참가 자격과 함께 주최 측이 직접 초청한 작품에 한해서만 심사한다는 점에서 국제 디자인



어워드의 ‘챔피언십 대회’로 불리기도 한다. [중략]

B사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가는 B사의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디자인 발굴과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사가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사는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바로잡습니다. 독일 A사의 한국 에이전시인 C사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례 3 2020서울조정515·516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파업 당시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고,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사 옥쇄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고 최근에는 복직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옥쇄파업을 진행한 노조원들은 당시 도장공장 안에 있어 일반 시민 등을 만날 수조차 없었고 최근 들어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한 바가 없는데도 이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8천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사 노조원들은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하지 않았으며, 복직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배포한 바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손해배상 청구는 신청인측의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하고 보도내용 중 노조원들이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무분규를 유지한 A사에도 갈등의 싹이 트고 있다. A사 노조는 지난해 9월과 12월 실시한 자구노력을 통해 임금 반납, 사내복지 축소 등의 조치에 앞장선 바 있다. 교섭권을 가진 기업노조는 여전히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년 전 옥쇄파업



사태를 주도했던 복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A사 옥쇄파업은 2009년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반발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벌인 파업을 지칭한다. 공장에 있던 쇠파이프와 볼트 등은 자동차 부품에서 무기로 돌변했고, 도장용 시너와 페인트는 폭탄이 됐다. 이들은 사제 총을 만들어 경찰과 사측 관계자들을 공격했고,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국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면서 옥쇄파업이 끝났다. [중략]

A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복직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했다. 2016년 B플랫폼을 C사에 헐값으로 넘겼고 이제는 D플랫폼을 같은 방식으로 넘기려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결국 A사의 수익이 악화됐고, 경영악화의 책임은 사측과 노조에 있다는 주장이 붙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자동차 업계 내 노조갈등을 보도하면서, A사에서의 이른바 옥쇄파업 당시 A사 노조원들로부터 일반 시민 등이 집단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사 옥쇄파업 노조원들이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동차>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4 2020대구조정41 / 정정청구

이미 정정보도가 게재된 바 있으나 보도내용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취지와 다르고 사전에 문안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정정보도를 다시 방송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방역업체, 도시락 업체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신청인 A시(市)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고도 방역업체 등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시는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운영비는 법률 등에 의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시가 관련 예산을 교부받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시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병원 방역소독비와 도시락대금과 같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A시가 국가로부터 관련 예산을 교부받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후 조정대상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담아 정정보도를 게재했으므로 더 이상의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사가 없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양 당사자가 구체적인 정정보도의 내용이나 게재방식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보도의 내용이 신청인이 원하는 청구취지와 다르다며 직권으로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방역업체 대표

50여일 정도 일을 하면서 결제를 부탁한 것이 최소한 15번, 20번은 결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A시에서 어떤 얘기가 없고.

대형병원에 도시락을 제공했던 한 업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역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하청업체에 줄 식자재 대금까지 밀렸지만, A시는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도시락업체 관계자

처음에는 성금으로(대금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비로 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A시가)국비가 어떻게 지급이 될지 아직 확답이 안 났다. 자기(A시)들도 확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이 온 것도 없었고.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예산은 549억원입니다. 그런데 A시가 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시 담당 공무원은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이라고 해명합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549억 원의 긴급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아 병원 방역소독업체와 도시락납품업체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시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사용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67조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병원 방역소독비나 도시락 대금과 같은 경비는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비'로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A시가 병원 방역소독비와 도시락 대금 등 관련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프로그램 방영중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위 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의 이행결과를 당일치 방송분과 함께 방송 홈페이지의 뉴스 섹션 내 최신 VOD(다시보기) 코너에 등록해 시청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

사례 5 2020서울조정832/833 / 각 정정청구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발표가 ‘가짜 뉴스’ 논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처가 결론이 나지 않은 FDA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우리나라 업체의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왜곡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우리나라 3개 업체의 진단키트가 미국 FDA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대미 수출에 문제가 없게 되었음을 미국 정부가 신청인 부처에 통보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 75만 검사 분량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실제 수출된 바 있다.
- 사전승인을 받았던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이후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처가 혼동을 초래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항변했으나,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3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정부가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가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기 위해 결론이 나지 않은 FDA의 진단 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관련 기업들 주식이 ‘테마주’로 언급되며 연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부른 발표로 관련 업체들의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A부처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산 진단 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부처가 결론이 나지 않은 FDA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국내 3개 업체의 진단키트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 받았음을 미 정부가 통보해왔으므로 A부처의 발표가 ‘가짜 뉴스’라는 제목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지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크기·활자체는 각각 조정대상기사 부제목 및 본문의 크기·활자체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의 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게재 방식대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6 2020경남조정41·42/43·44 / 각 정정·손배청구

제보내용을 신뢰하여 보도하였으나 조정 심리 중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신문 지면 1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A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A병원이 이를 감추려 하였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및 CCTV 조회 요청을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며 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폭행사건을 감춘 사실이 없고, 진료기록부 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CCTV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른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눈 부위 멍자국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환자로도 병원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진술했으며 멍자국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 A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CCTV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대고 있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B군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10여 일간 입원 중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얼굴·눈 부위에 심한 타박상(상해 2주)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 C씨에 따르면 “환자는 저희 어머니인데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입원 중 심한 폭행을 당해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 병원측은 가해자를 밝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C씨는 지난 13일, 어머니 퇴원을 위해 병원 방문, 폭행으로 얼룩진 어머니 얼굴을 본 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병원측에 진료기록부와 CCTV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주말이어서 안된다”, ‘담당과장이 자리에 없어 결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강력하게 내세워 조회를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C씨는 “의료법 제21조 1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죄를 물어 A병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군 A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해 A병원이 이를 감추려 했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및 CCTV 조회 요청을 거부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약한 푸르스럼한 눈 부위 멍자국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환자는 계속적으로 병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그 멍자국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B군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A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고, CCTV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함을 파악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B군 A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1면에 위의 보도문을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고딕체로 볼드처리하여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의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좌측 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자료사진은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신청인 병원 전경으로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위의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다음(DAUM)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도 위 각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7 2020경기조정231·232 / 정정·손배청구

사설인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시 시장 재임 당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돈이 되는 사업만 펼쳐왔고, A동굴을 개발하면서 정치자금을 확보했다는 의혹들이 돌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해당 사설에서 보도한 의혹은 모두 소문에 기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기사화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과 소문은 허위이다.

■ 조정결과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정정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소문에 의한 설은 A시장 민선 5~6기 8년간 시장이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돈이 되는 사업만 펼쳐왔고, A동굴을 개발하면서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를 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또한, A역세권 개발에 있어 시장이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상업 업무지역으로 역세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거 공간 아파트 건설이 함께 개발 되면서 A역세권 개발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가 소문을 타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정치자금으로 B정당과 중앙언론 그리고 검찰까지 자금이 부러졌다는 설이 돌고 있다.

설에 의하면,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 확보는 A시설공단 설립과 이후 A도시공사를 통해 가능했다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뉴스>칼럼>사설면에 조정대상보도인 사설을 통해 C국회의원의 A시장 재임시절과 관련 하여 ‘A동굴 및 A역세권 개발을 통한 정치자금 확보와 리베이트 배포’ 등의 내용을 기사화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국회의원에 대해 해당기사에서 제기한 일체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해당기사 내에서 언급된 인물들과 관련된 소문 또한 기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모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칼럼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위에서 언급된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의 해당 내용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8 2020서울조정1902·1980/1903·1981 / 각 반론·정정청구

신청인 대학의 청소용역원 해고, ‘갑질’사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관계 부분은 정정, ‘갑질’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대학이 경영난을 이유로 청소용역원을 해고하고, 노조가 생긴 후 잡무를 시키기 어렵게 되자 청소용역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으며 직접고용으로 노조원을 회유했다고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청소용역원들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청소용역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며, ‘갑질’이나 회유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보도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청소용역원을 해고한 것이 아닌 용역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업무종료이다.
- 청소용역원의 근무장소 출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정년이 도과되어 계약이 종료된 청소용역원이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한 것을 통제한 것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무발 파종과 재배관리는 적법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 기존인력의 절반인 7명을 직접고용 하겠다거나 직고용을 하겠다고 회유한 사실은 없다.

■ 조정결과

심리 당시 중재부에서 신청인 측이 청소용역원을 직접고용한 바는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노조 설립 등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반론 보도로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신청인 대학과 청소용역원과의 고용 관계 부분은 정정, ‘갑질’ 부분은 반론으로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언론사의 취재를 종합하면, B대학 쪽은 지난 1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14명 전원을 계약 해지했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데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략]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 문제를 핑계로 눈엍가시인 노조원들을 내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재정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2015년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학교가 청소 외 업무를 광범위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안에 3천평 크기의 무밭이 있는데 노조가 생기기 전엔 청소노동자들이 파종하고 재배했었다”고 말했다. 노조가 생긴 뒤엔 고유 업무인 청소·미화 외의 일을 시키기 어렵게 됐다.

노조원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도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노동자 C아무개(69)씨는 4월 내내 근무 장소인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다. 정년인 만 70살을 채웠으며 학내 관계자가 느닷없이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청소를 더럽게 한다’며 화장실 호스를 모두 압수해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이 일일이 대야에 물을 받아 뿌리며 청소를 하기도 했다. C씨는 “노조 가입 전엔 이런 괴롭힘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노동자들에게 기존 인력의 절반인 7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노조를 와해하려는 꼼수”로 봤다. 실제로 학교 관계자가 청소노동자를 불러 “따로 찾아오면 직고용도 해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대학교가 경영난을 이유로 청소용역원을 해고하고, 노조가 생긴 후 잡무를 시키기 어렵게 되자 청소용역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노조원을 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대학교는 청소용역원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용역제공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대학교 측은 “용역제공업체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는 청소용역원의 노조 가입과는 무관하고, 학교 측 관계자의 ‘갑질’ 및 ‘직고용 회유’ 또한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9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사회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하게 하며, 게재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9 2020서울조정1911·1912/1913·1914 / 각 정정·손배청구

SNS 게시물만으로 공인인 신청인이 문제성 발언 등을 했다고 단정보도한 데 대해 게시물 작성자가 기억의 오류를 시인함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기관장인 신청인 A씨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있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C검사장을 쫓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E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인용해 지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B방송사가 ‘의혹 보도’를 종료한 후 E변호사와 통화했고, E변호사 또한 자신의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거대 언론사로서 시청자들에게 영향이 큰 피신청인이 검사장과 언론사 기자의 유착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허위 내용을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씨는 B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서 C검사장과 D방송사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 B방송사 보도 몇 시간 전에 E변호사에게 전화하여 C검사장을 내쫓을 것이고 이를 위한 B방송사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보도에서 인용한 SNS 게시물 작성자인 E변호사가 통화 시점에 대한 기억의 오류를 시인하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청인 A씨가 보도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D방송사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D방송사 전 기자 F를 기소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5일 새벽 2시쯤, 한 페이스북 글이 법조계에 퍼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E변호사가 잠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E변호사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꾸준히 써왔다. E변호사는 이 글에서 “B방송사의 C씨와 D방송사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C씨는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폐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며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중략]

E변호사는 이어 “몇 시간 후 C씨의 보도가 났고…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고 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3월 31일 B방송사 뉴스 프로그램 보도 전에 미리 A씨가 보도내용을 알았다는 E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A씨는 “B방송사 보도 후 1시간 이상 지난 오후 9시경에 통화가 이뤄졌으며, 통화내용 또한 B방송사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제2면 <바로잡습니다> 란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0 2020부산조정39·40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C교회의 담임목사 A가 교인들 몰래 이단인 B교회에 교회를 매각하여 교인들이 찬, 반 양측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재판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매각대금이 목사 개인명의 통장에 들어있고, 노회 중진 목사와 총회 감사부원이 A목사와 짜고 교회 분립에 개입했다고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A목사로 보도된 신청인은 교회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당회 등 절차를 거쳐 매각이 결정된 것이므로 교인 모르게 매각한 것이 아니며, 매각대금도 교회명의 통장에 적립되어 있고 다른 목사들과 짜고 분립을 시도한 것이 아닌데 왜곡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A목사가 교회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당회원들이 주장하여 매각되었다.
- 교회 매각은 A씨가 교인들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 매각 후 교인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라지지 않았고 함께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매매무효소송을 진행했다.
- 교회 매각대금은 신청인 개인 통장이 아닌 교회 명의로 된 예탁금 통장에 적립되어 있다.
- ‘개혁위원회’측과 분립 제안에 응한 바 있으나 다른 목사들과 사전에 결탁한 바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에 신청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입수한 자료 및 취재내용에 의거,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부분 중 ‘매각대금이 신청인 개인명의 통장에 있다’는 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로 볼 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정보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예정합동 D노회 소속 C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단에 교회를 매각 후 재산을 나눠먹기 하려다 실패하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교회분립 과정에서 노회의 중진 목사 2명과 총회 감사부원인 목사까지 개입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E시 소재 C교회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E시 F동에 위치한 교회를 담임목사인 A목사가 교인들 모르게 이단인 B교회에 35억원에 매각한 후 이를 두고 교인들은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재판은 계속해오고 있다. [중략]

이와 함께 거액의 매각대금은 A목사의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교회 분립이야기가 흘러 나오게 된 것이다.

이를 주동한 인물은 다름아닌 D노회 중진인 G목사와 H목사, 그리고 총회 감사부원인 I목사 등이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예정합동 D노회 소속 C교회의 A담임목사가 교인들 몰래 이단에 교회를 매각하여 이를 두고 교인들이 찬, 반 양측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재판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노회 중진 목사와 총회 감사부원이 A목사와 싸고 교회 분립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목사는 “교회의 매각은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매수자가 이단인지 알지 못한 채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후 교회를 되찾기 위해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승소하지 못하고 마무리된 상황이며,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아 이른바 ‘개혁위원회’측과 분립 제안에 응한 바 있으나 다른 목사들과 사전에 결탁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위 기사 중 ‘거액의 매각대금이 A목사의 개인 통장에 들어 있다’는 부분은 ‘교회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사례 11 2020대전조정41·42 / 정정·손배청구

지역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고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지역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고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편집국장(신청인 1)의 자녀(신청인 3)가 놀이시설 이용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장시간 자녀를 방치하여 배우자(신청인 2)가 항의한 것을 폭언했다고 기사화하고, 고교 재학생인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불량학생으로 보도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편집국장의 배우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편집국장도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와 함께 기자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을 취하하고, 향후 신청인에 대한 후속보도를 하지 않겠으나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리 결과, 해당 보도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커 정정보도를 톱기사 형식으로 게재하고 상징적인 액수이나 손해배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보도 1]

[전략] 이날 수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 부인 B씨는 아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며 항의를 했다. [중략]

C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D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팀장)으로 D군내 장애인



가족을 모를 리 없다. “나는 그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취재기자에게 모든 자료(CCTV)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민을 만나 상황을 취재하며 제3자의 의견을 듣던 중 “남편(A언론사 편집국장)은 옆에서 서있고. 부인 B씨가 큰 목소리로 항의해 남편의 직업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B씨의 아들은 무엇을 했나. C랜드 관계자는 “B씨 아들은 친구들과 공원 옆에서 담배를 피고(D군 E고등학교 재학중) 있었다. CCTV에 담배 피는 영상이 찍힌 것이 있다”라며 답변을 해왔다. [후략]

[보도 2]

[전략] 지난 2일 오후 11시 20분 제보를 받을 당시 제보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로 해 취재가 시작됐다. 3일 제보자에게 확인결과 정보제공 동의를 있었으며, 4일 오후 3시까지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어떤 외압이 가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더 이상 정보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중략]

B씨는 아들이 허리를 다쳐 D군 소재 정형외과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사무국장의 말을 빌어 군대도 못 갈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치료받고 있는 정형외과 사무국장을 만나 본인이 환자의 병명을 확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냐고 묻자 정형외과 병원장님의 진단소견을 보고 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외과 병원장은 만날 수가 없었다. [중략]

언론사들마다 기자의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기자는 품위유지 조항으로 공과 사는 구분지어 활동을 해야 하는 직업군이다. 언론인은 공인으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이기 이전에 한 학생의 부모라고 해도 본인의 직업이 언론인이라면 자신이 언론인인 걸 아는 지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언행 불일치는 자신의 살을 깎아 먹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배우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편집국장도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지역신문사의 편집국장 가족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 및 칼럼/연재면에 게재하되(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하되, 홈페이지 상단에는 톱기사 형식으로 7일간 게재한다),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한다(제목은 굵게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합해서 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기자는 신청인 2.가 재직하는 복지관 및 신청인 3.이 다니는 학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고, 피신청인 및 기자는 신청인들 및 신청인들 가족과 관련된 후속 보도를 일체 게재하지 않는다.



사례 12 2020서울조정2236·2237/2238·2239 / 각 정정·반론청구

중재부가 보도문 게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보도문 확인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A시(市)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설치비를 평균 약 4배가량, 최대 약 70배가량 단가를 높여 지급했으며 공공 태양광 설치 건수가 정권에 따라 증가했다고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시는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를 부풀려 지급한 것은 부정확한 산정식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설치비가 문제된 B자치구 교통체험관 태양광의 관리주체는 A시가 아닌 B자치구이고, 태양광 보급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권과는 무관한데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A시가 설치비를 부풀려 지급했다는 내용의 근거 수치는 잘못 산출된 수치이다.
- 설치비가 문제된 B자치구 교통체험관 태양광의 관리주체는 A시가 아닌 B자치구이다.
- A시의 공공 태양광 설치 건수가 정권에 따라 증가한 것은 아니며 A시의 태양광 보급 증가율은 세계 및 전국적인 추세에 미치지 못한다.
- 태양광 설치 단가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C의원의 일방적 의견을 게재하였으나 태양광 설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시가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를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했다는 부분에 한해 정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중재부는 공공 태양광 설치 주체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게재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보도문 확인 후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중재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1kW당 설치비를 평균 약 4배가량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최대 약 70배가량 단가를 높여 받은 업체도 있었다. [중략]

A시의 공공 태양광 설치 건수는 이명박 정부 때 280건, 박근혜 정부 때 359건, 문재인 정부(올 7월까지) 때 431건으로 증가했다. D사는 2017년 13억3700만원을 받고 A시 B교통체험관에 태양광 설비 시공을 했다. 1kW당 1억1300만원을 받았다. 평균 단가보다 70배가량 돈을 더 받은 것이다. E사의 경우 2018년 F역, G역, H역 변전소 등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원래 단가보다 6배 많은 1kW당 1000만원을 받고 시공했다.

C의원은 “태양광 기술이 발달하면 단가도 그만큼 줄어야 하는데,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세금으로 이 업체들에 부당한 이익을 준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가 1,078개의 공공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를 최고 70배, 평균 약 4배가량 부풀려 지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시가 태양광 설치비를 최고 70배 및 평균 약 4배 가량 부풀려 지급한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A시는 “태양광 설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발주처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A시가 추진하는 모든 태양광 시공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태양광 보급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권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을 이행한다.
- 신문 종합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크기는 통상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3 2020서울조정2572·2573 / 정정·반론청구

체육시설 시스템을 시공하는 신청인의 시공 소재가 인체 유해성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학술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의 B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시공소재로 검토중인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가 환경오염, 인체 유해, 고가 시공비, 과다 유지·보수비용 발생 등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체육시설 시스템을 시공하는 신청인 회사는 A시 B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설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시공하는 FRP 수영장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으며, 인체 유해, 과다 유지·보수비용 등 문제점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FRP는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소재이며, A시 B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공을 검토 중인 FRP 수영장은 충분한 안전성 및 안정성 검증을 받았다.
- FRP로 시공한 지자체 운영 수영장이 다수 존재하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 FRP 수영장은 유해물질 발생의 우려가 적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튼튼하고 경제적이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21개 지자체에서 FRP로 시공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FRP 소재의 인체 유해성 관련 학술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를 제안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가 오는 2024년까지 건립예정인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내 수영장을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 시공기로 결정하고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9억여원을 들여 조성하는 수영장 수조(유아풀: 12m x 3레일, 성인풀: 25m x 4레일)를 환경오염, 인체 유해, 고가 시공비, 과다 유지·보수비용 발생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는 FRP소재 시공을 왜 유독 A시만 고수하고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중략]

FRP는 유리섬유와 불포화 폴리에틸렌수지, 경화제, 파라핀왁스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가루에 노출될 경우 현기증, 두통, 의식불명, 피부홍반, 결막염 등을 일으킨다. 해체 후 불에 태우면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특히 부유 상태의 유리섬유 입자가 피부·점막 등에 접촉하면 각종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FRP업계 관계자는 “FRP 구조물은 내구성 및 안정성이 약해 2~3년 주기로 도색을 해야 하는 등 과다한 유지보수비용 발생으로 경제성이 낮다”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유리섬유가 걸로 드러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의 B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시공소재로 검토중인 FRP 소재가 인체유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FRP로 시공한 지자체 운영 수영장이 다수 존재하고, FRP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학술적 검증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사회면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게재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4 2020서울조정2798/2799 / 각 정정청구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간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치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양 당사자였던 신청인 자치구와 피신청인이 당시 반론보도 게재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마치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구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신청인 자치구와 언론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자치구 부구청장 과잉 의전 관련 보도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중 반론보도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항변했으나, 중재부는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본지가 보도한 'A자치구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기사에 대해 '과잉노동 사실이 없다'며 A구청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500만원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A구청은 10월 27일 A구청 홈페이지 해명자료 코너를 통해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차량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남짓으로 과도한 의전이나 과잉 노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A구, 부구청장, 운전직 공무원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A구청의 해명은 “출발 5시 30분·도착 21시의 의미는 차량의 최초 운행시간과 마지막 운행시간을 기재한 것이며 실제 운전은 4시간미만으로 과잉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12월 2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A구청이 요구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구청 직원들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을 원활하게 배차 받고 부구청장의 전용차량 운행은 관련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며 출퇴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코로나 19 대응 업무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A구 측 반론보도문을 실는 것으로 조정 합의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지는 지난 12월 14일 지면에, 12월 15일 인터넷에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A구와 본지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A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을 완료한다. 신문 1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위의 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사례 15 2020부산조정4 / 정정청구

기사에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과 화면구성 등으로 유추되는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현직 군의원인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 받지 않고 훼손했다가 논란이 되자 원상복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의 장비를 사용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원상복구를 진행했다고 3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농사를 목적으로 법률상 허가나 신고 없이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공연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상복구를 한 것이며, 봉사단체의 장비 사용은 단체 내의 절차를 따른 것이고 감사기간 중의 의정활동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봉사단체의 장비를 사용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때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원상복구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그린벨트 훼손 행위의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사실만을 보도하였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그린벨트 훼손 여부는 중재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보도 중 ‘장비의 임의 사용’이나 ‘불성실한 의정생활’과 같은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화면 구성 등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신청인이 봉사단체 장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고, 중재부의 반론보도문 내용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현직 군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받지 않고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정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A군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B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땅을 정비하고 경작 행위를 한 사람은 A군의회 C·D군 소속의 E의원.

지난달 24일 그린벨트에 속한 이 일대 90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형질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농사를 짓더라도 높이 50cm 이상을 정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 작업이 50cm를 훌쩍 넘겼지만, A군에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는 없었습니다. [중략]

E의원은 ‘주말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매수했고, 일부 표면만 정리만 해 법을 어기는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E / A군의원

‘개인 사유지인데 물로 계속 채워 놓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여기도 밭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부분에서 밭을 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후략]

[보도 2]

현직 군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받지 않고 훼손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F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군의원은 땅을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런데 A군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군의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기자입니다. [중략]

F방송사가 A군 담당과에 처음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난 6일, 하루 뒤 진입로 정비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재차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자, 담당자들은 일주일만 지난 12일에야 현장을 확인했고, 다시 나흘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관련 법 위반을 부인하던 E의원은, 취재가 계속되자 스스로 훼손된 땅을 원상복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G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위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5건.

A군이 평소와 달리 소속 지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해 다른 잣대로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3]

[전략] 그런데 E의원이 자신이 과거 이사장으로 지냈던 봉사단체의 장비를 자신의 땅 정비와

복구에 활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복구를 한 시기가 A군의회 본회의 기간이어서, 의정활동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지적도 나옵니다. B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트럭 한 대가 라이트를 비추며 골목길을 나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A군 E의원, 그런데 트럭 한 칸에 집수리 봉사단체의 법인명이 적혀있습니다.

10여 년 전, 봉사단체가 후원금으로 구입한, 봉사단의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 트럭입니다. E의원은 이 트럭을 수차례 자신의 땅 정비에 사용했습니다. [중략]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부인하던 E의원은, 취재가 계속되자 땅을 원상복구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혀왔는데, 복구 작업은 A군의 정례회 본회의가 시작된 이튿날 이뤄져 개인적인 문제로 의정활동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평일인 지난 12일 오전 현장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당시에, E의원은 민원인을 만나는 등의 의정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땅을 측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E / A군의원, 지난 12일

(의원님, 의정활동 할 시간 아니세요?) '지금 회의시간이 아니라 민원인 만날 수는 있어.'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현직 군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 받지 않고 훼손했다가 논란이 되자 원상복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의 장비를 사용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원상복구를 진행하였다고 연속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군의원인 E의원은 '봉사단체의 장비 사용은 단체 내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행정감사와 관련한 의정활동 등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으며 윤리규정 등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위의 <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고, 위의 보도문의 두 번째 단락(이에 대해...)을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배경화면으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의정활동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스<H뉴스> 페이지 및 <굿모닝A뉴스>에 위의 <보도문>의 보도문 낭독 동영상을 게재한다.



사례 16 2020서울조정276/277, 278 (병합) / 정정, 정정, 반론청구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기사 부제목에도 신청인 측 반론을 담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공영방송사 자회사의 대표인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폭언을 하고 직원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을 요청하자 반려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직원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하였고, 직원 병가 요청을 거부했다는 등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문제된 발언은 형사고발에 해당되는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 병가사용에 대한 반려는 A씨가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복무규정과 당시 전문노무법인의 의견을 참조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것이다.
-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었다.
- 제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 행해진 것처럼 보도되었으며 대표와 직원의 극단적 선택 간의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제목을 통해 연관성을 암시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A씨가 일부 직원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편향되게 기사화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서로 상황과 일시가 다른 녹취물 중 특정 부분만 짜깁기 된 것이다.
- 전사워크숍 상황, 차량이슈에 대한 상황, 업무상의 과실과 배임 등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요청한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보도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나 신청인의 추가적인 반론의 필요성이 있다며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부제목에 반론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조정안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부제목 : 직원들에게 “너희는 C급·D급, 아무것도 아니야” 막말
리무진 시트 포함된 업무차량 관철하려 고성·폭언에
우울증 진단받은 직원 병가 요청 반려...강제출근 지시도
A 대표 “몇몇 직원 업무처리 문제점 지적했던 것” 해명

B방송 자회사인 B미디어 A대표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대표의 폭언과 모욕, 협박 등 ‘극한 갑질’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직원 외에도 최소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A대표는 취임 직후 업무용 차량이었던 ‘현대 제네시스 G80’을 내켜 하지 않고 리무진 시트가 포함된 ‘기아 K9’ 최상위 옵션 차량을 원했다고 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인사와 총무 업무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폭언과 고성을 반복하며 괴롭힘 행위를 했다. [중략]

이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부장급 실무 책임자 C씨가 지난 1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 사용을 요청하자, A대표는 이를 반려했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진단서로는 출근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영지원팀장에게 C씨를 ‘강제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당일 임원회의에서 A대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라는 거 하라고, 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며 C씨를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C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미디어 노조의 설명을 보면, C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회사에선 ‘C씨가 원래 약물 중독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되기도 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미디어 A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대표는 “경영상 이유로 일부 직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것이고,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녹취록만으로는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 24시간 게재 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의 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마지막 부제목 부분을 「A대표 “몇몇 직원 업무처리 문제점 지적했던 것, 피해자에게 강제출근 지시한 적 없어” 해명」으로 수정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네이버, 다음)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7 2020서울조정402/403 / 각 반론청구

동일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신문 지면과 인터넷신문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문안을 다르게 하여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병원 특혜 대출에 B변호사가 개입했다는 C정당의 의혹 제기를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B는 D은행의 A병원 대출건은 소속 로펌 금융팀에서 은행에 자문했던 것이고 신청인은 이에 개입한 일이 없는데 마치 신청인이 특혜 대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고, 신청인에 대한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D은행의 A병원 대출건은 소속 로펌 금융팀이 D은행을 자문했던 것이고 형사팀 변호사인 신청인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 신청인은 2013년 E씨가 F은행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F은행 법무실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변호한 사실은 맞으나 위 고소 사건을 위하여 A병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청인이 제안한 반론보도문 전부를 실을 수 있으나, 지면에는 반론보도문안을 간략하게 편집해 게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청인이 동의하여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 반론보도 문안을 다르게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C정당은 10일 'A병원 특혜 대출'에 여권 핵심 인사인 B변호사와 G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병원 특혜 대출'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A병원 H원장이



신용도가 안 좋은 상황에서 2012년 D은행, F은행에서 수천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C정당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에 따르면, B변호사는 2013년 H원장의 특혜성 대출을 도운 F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이 H원장과 동업 관계였던 사업가 E(63)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F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은 ‘문서 위조’를 통해 내 동의 없이 H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정당은 이 사건을 맡은 B변호사 소속 로펌은 2013~2016년까지 2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12년 B변호사 소속 로펌은 H원장이 D은행으로부터 1400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계약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1

본 지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으로 C정당 의혹 제기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변호사는 “2012년 12월에 이뤄진 D은행의 A병원 대출은 소속 로펌 금융팀이 A병원이 아닌 D은행을 자문했던 것이고, 형사팀 소속인 본인은 이에 개입하거나 아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내용 2

본 지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으로, A병원 특혜 대출에 B변호사가 개입했다는 C정당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변호사는,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D은행의 A병원 대출은 소속 로펌 금융팀이 A병원이 아닌 D은행을 자문했던 것이고, 검사 출신 형사팀 변호사인 본인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알고 있는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B변호사는 2013년 E씨가 F은행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F은행 법무실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변호한 사실은 맞으나 위 고소 사건을 위하여 A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 1]을 신문 8면에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11.3~11.5p)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위의 [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 2]를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8 2020대구조정33 / 정정청구

공적 관심사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 정정이 아닌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의 내진성능이 낮으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선암 등에 걸릴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원자력발전회사 B는 맥스터가 안전관련 구조물의 내진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충분히 안전하게 건설되었고, 삼중수소를 포함하여 원전 주변주민에게 노출되는 방사선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어 원전 주변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편향된 왜곡보도로 신청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기존 맥스터 및 신규 맥스터가 내진 성능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원전 주변 주민에게 노출되는 방사선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고 원전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문제된 부분이 개인적인 견해나 원전 주변 주민들의 보편적인 우려를 표한 것으로, 사용후핵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공익성이 크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제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도의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MC : 자 추진경과를 좀 살펴봤는데 B회사가 이렇게 맥스터 증설을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한지 4년 만에 결정이 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C / D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5.8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맥스터 설계가 내진성능에 대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진을 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진성능을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설계변경이 포함되면서 심사하는데 대개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MC : 원전시설로부터 1km도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은 어떤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중략]

인근주민 : 손자들이, 어린 애들이 같이 있으니까 방사능 피폭도 있고, 내부피폭도 있고 그래서 걱정되죠. [중략]

인근주민 : 아우 많죠. 갑상선암 뿐만 아니고 멀쩡하다 싶었던 사람들도 피부암이나 폐암, 간암 등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암 환자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MC : 인근 주민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C씨 : 삼중수소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수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소가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중수소는 일반수소 하고는 다르게 입자가 3개로 이뤄진 삼중수소인데요. 이러한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뿜어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기존 맥스터의 내진설계 성능이 낮다는 D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1차로 건설된 맥스터의 설계기준지진은 0.2g, 규모6.5 수준으로 안전하게 건설됐으며, 충분한 내진성능 값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원전 반경 5킬로미터 거주 여성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부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C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해, B회사 측은 B회사를 상대로 일부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갑상선암 발병과 피폭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시간 중에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되, 낭독 중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방송시작 직후 자막(A원전을 둘러싼 갈등)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아나운서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이 방영된 방송분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섹션 최신VOD 코너에 등록시 위의 보도문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청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제목, 본문, 보도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여 보도할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방송하기에 앞서 신청인 측에 사전 통보한다.

사례 19 2020충북조정11·12·13 /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기사를 이미 삭제했으나 신청인의 별도 보도 필요 소명에 따라 중재부에서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종합건설회사인 신청인이 시공한 고무 교좌장치 중 90% 이상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해당 교좌장치 공사를 '하청에 3도급 재하청' 하였으며 KS 순정 부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회사는 보도에서 고무 교좌장치 균열의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는 정식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뿐, 이를 재하도급 준 사실이 없으며 공사에 사용된 교좌장치는 도에서 제공한 부품으로 신청인이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반론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교좌장치를 부실공사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해당 공사를 하청에 3도급 재하청을 하지 않았고 정품자재가 아닌 비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기사를 삭제하였으며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기사가 게재된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있으므로 보도게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중재부는 기사가 이미 삭제된 상태이나 반론보도를 새로이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A회사 측에서는 ① 'B교'의 고무 교좌장치 중 90% 이상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② 공사를 '하청에 3도급 재하청'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③ KS 순정 부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와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섹션에 게재하되 게재 당일 12:00(정오)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위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사례 20 2020서울조정1473/1474 / 각 정정청구

조정신청 전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는데, 해당 반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단체가 진행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특정 언론사가 전면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단체는 모니터 대상에 B언론사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부러 해당 언론사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의제재 건수가 적은 프로그램을 모니터 대상에서 빼면서 제외된 것인데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시민언론단체로서 명예와 언론보도 감시활동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반론보도문에서 신청인 A단체가 진행한 사업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사업 취지를 왜곡했다.
- B언론사의 메인뉴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해당 방송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면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B언론사 시사 대담프로그램이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모니터원 감소로 문제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모니터링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 A단체는 행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대담프로그램 모니터 대상을 결정했다.

■ 조정결과

조정신청 전 신청인의 요청으로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반론보도에 대해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반론보도문에 사업명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입장이 조정대상기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사 본문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그러나 A단체는 모니터 담당자가 줄어 일부 기간만 B언론사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기간은 포함됐다고 알려왔습니다. A단체가 B언론사를 모니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은 2020년 종편 모니터링 사업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올 1월 이후 A단체의 종편 모니터 보고서에는 C언론사·D언론사·F언론사 3사 프로그램만 대상이었고, B언론사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바로잡습니다>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정정하면서, A단체가 2020년 종편 모니터링 사업의 모니터 대상에서 B언론사를 전면 제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단체는 B언론사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B언론사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의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하위 프로그램인 C언론사와 B언론사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결과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수정사항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중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링」 사업을 「양성평등 팩트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링」 사업」으로 수정한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12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위에 따라 수정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의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 및 반영되도록 한다.

사례 21 2020강원조정32·33/34·35 / 각 정정·손배청구

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책자 납품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갑질’, ‘뒷돈’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가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요구하였고, 서점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거래를 끊는 등 공무원 ‘갑질’ 논란이 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서점 주인과 상품권 지급에 대해 협의한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면 이는 도서 구입에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갑질과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서점 주인이 상품권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점의 납품 지연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것이다.
-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해당 서점에 상품권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것이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 상품권을 지급 받게 되면 이는 추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된다.

■ 조정결과

심리 결과, 중재부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갑질’, ‘뒷돈, 리베이트 관행’ 등으로 다소 과하게 표현하고, 신청인의 반론은 충분히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물건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뒷돈, 이른바 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이 이제는 없어질만도 한데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 :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금액의 5%를 문화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중략]

도서관 측은 납품 기일이 늦어서 계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품권을 요구한 건 맞지만 도서관 운영비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들 욕심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놓는 게 저희 욕심이잖아요.”

A도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곧 감사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 금액의 5%를 문화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측은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해당 서점에게 상품권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 받게 되면 이는 추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무원 갑질’이나 ‘뒷돈 챙기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점 주인이 상품권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점의 정기간행물 납품 지연으로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위의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방송의 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뉴스> 8 뉴스섹션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24시간 동안은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나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24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뉴스> 8 뉴스섹션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상자 처리하여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2 2020서울조정1969·1970 / 정정·반론청구

제보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담긴 보도에 대해 중재부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복지시설 원장인 신청인이 소속 직원을 상대로 보직에서 면직시키는 동시에 급여가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 등을 강요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복지시설 원장은 A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깎은 사실이 없고 해당 복지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발언을 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보자 일방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 파악 없이 신청인을 악덕 원장으로 기사화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A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삭감한 바 없다.
- A복지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다른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센터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적한 것이다.
- 이는 A복지사의 업무태만을 지적한 업무 범위 내 권한 행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충분한 사실확인을 통해 보도했으므로 정정보도 게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보도 대신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16일 B통신사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3년 넘게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여성 A씨는 원장 등 관계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12월 휴직을 결정했다.

당시 복지운영팀장이었던 A씨는 시설 측이 갑자기 해당 팀의 인력을 줄이는 등 비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원장 등이 자신을 팀장 보직에서 면직시키는 동시에 급여가 삭감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할 것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A씨에게 “야 이 X끼야”, “미꾸라지 같은 것이”, “이게 확 씨. 지X하고 있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고용노동부 북부고용노동지청(고용노동지청)과 C구청 산하 C구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내부조사에 착수한 이들 기관은 A씨가 당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사회복지기관 원장이 A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과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A복지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 원장은 ‘A복지사의 근로계약서는 부서 변경에 따라 새로 작성된 것이고 급여가 삭감된 것이 아니며, A복지사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다른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센터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는 A복지사의 업무태만에 따른 것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전체화면의 50% 이내)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12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들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의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사례 23 2020서울조정2102, 2020서울조정2103 (병합) / 각 정정청구

신청인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대신 방송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교사들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학교에서 단체 음주를 했고 신청인 교육청이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நட장 조치를 했으며 이 조치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교육청은 음주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학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러한 제반 절차는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이 올라온 8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마치 신청인이 நட장조치를 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교육청은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오기 전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징계 의결,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따라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청와대 청원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대신 원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막걸리 술판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은 틈에 벌인 일인데, 드러난 것만 스무 번입니다. 교육청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서야 넉 달 만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략]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 : 출근해서 점심을 먹게 되면 날마다 술이 나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시작된 술이 퇴근할 때까지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장까지 함께 마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A교육청의 조사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20번 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5월 초 사건이 A교육청에 접수됐는데 닉 달가량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자 이후 8일 만인 지난달 말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A교육청은 정확히 조사하느라 징계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A교육청은 “닉 달 동안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달리 청와대 청원이 공개된 8월 20일 이전인 8월 3일 이미 해당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을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낭독하도록 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4 2020서울조정2585/2586/2587 / 각 정정청구

중재부의 권유로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3개 매체 뉴스면 초기화면에 각각 별도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효과를 제고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교수로 임용된 신청인이 모 업체 대표를 겸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상 겸직금지를 위반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교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데 마치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여 법적 문제가 되는 교수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술인증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교수는 벤처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절차에 따라 ‘겸직허가서’를 받은 상태였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학교측의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사에서는 인터넷의 원 보도 하단에만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자 했으나 중재부의 권유로 3개 매체 뉴스면 초기화면에 각각 별도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효과를 제고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교수 채용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올해 초 조교수로 채용한 A씨가 채용 이후 지금까지 이전에 맡고 있던 한 업체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전임교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사학법과 대학 자체 규정위반입니다.

A교수 운영 업체 관계자 : “(대표이사께서 A선생님이 맞는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B대 교수님도 하신다는데?) 네, 맞습니다.”

대학 측은 2캠퍼스 운영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방송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업체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고 언급된 A교수는 “올해 초 채용 당시부터 학교에 검직을 요청해 지난 6월 검직 허가를 받았고, 7월 말 벤처기업 인증도 받아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대표를 겸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 프로그램 및 초기화면에 각각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각각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 2020경남조정89·90/91·92/93·94 / 각 정정·손배청구

지역방송 토론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군에서 B군위원의 땅 앞에 다리를 놓아줘 차익을 보게 됐다는 내용을 토론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사실상 신청인의 땅과 다리 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교량설치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또는 설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B군위원은 교량설치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해당 의원 소유 땅에 다리가 놓인 것이 아니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도 없었다.
- 해당 교량은 인근 C모씨 소유 농장의 전용진입도로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사설 진입교량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흐름의 위험성으로 인해 철거하고 안전성이 높은 위치로 옮겨 이설한 것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지역사회의 합리적인 의심을 보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중재부는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보도 중 토론 프로그램에 한해 반론보도를 내보내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토론자 1 : 저 사안은 특히나 문제의 B의원이 A군의회 산업건설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 다리를 놓는 것을 주도했던 게 도시건축과고요, 그러니까 관련부서 아닙니까 그죠? [중략] 이익을 받은 B의원이라든지 그 남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라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싶은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구요. [중략]

토론자 2 : 그 다리를 놓고난 이후에 또 갑자기 땅값이 다리로 인해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득을 봤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략]

토론자 3 : 공무원이 의원님의 비위를 맞춰준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후략]

[보도 2]

D도 A군이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새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직 군의원의 땅 바로 앞인데, 다리 덕에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략]

땅의 주인은 D도 A군의회 B의원, B의원은 동생 남편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에 걸쳐 6,600㎡를 4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B의원이 땅을 산 지 열 달 뒤인 지난해 12월, A군은 군 예산 5천 5백만 원을 들여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놔습니다. [중략] B의원은 다리를 놓을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B씨 / A군의회 의원 : “저희 땅과 인접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량하고 10여m 떨어져 있어서. 저는 알지도 못했구요…”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사는 지난 10월 13일 A군이 B의원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해줘 B의원이 차익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B의원 측은 해당 교량은 애초 인근 토지 소유주의 민원 제기에 따라 현 위치에 재설치된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교량은 현재 설치된 교량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교량의 설치 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 제목 및 본문을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여 내보낸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 송출영상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에도 포함하여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섹션 초기화면 중 '방송내용' 목록에 위의 보도문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통상적인 게재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의 보도문 제목과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되어있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6 2020광주조정79 / 반론청구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계약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한 비판에 보도내용이 집중되고 반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B시(市)로부터 임차한 철도복합시설과 철도관사를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업체는 게스트하우스 등 운영 목적으로 B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을 준비했으나 임대인인 B시가 서류 처리를 지연하여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 고의적으로 미등록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신청인 A업체는 B시와 ‘게스트하우스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철도복합문화시설 2층과 철도관사 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정도면 게스트하우스 등록 관련 행정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픈을 준비했으나, B시가 임대인으로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비하지 못하는 서류 4건에 대한 처리를 지연해 등록이 되지 않았다.
- 이에 계약기간 동안 건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며 A업체가 B시 문화도시 사무국으로부터 밴라이프형 용역을 수주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익명 처리하였고 불법 숙박업 운영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게스트하우스 등록을 하지 못한 신청인의 사정이 있고 반론기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점을 감안, 양 당사자가 합의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B시 문화도시 사무국에서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 귀촌 'B시 살자' 용역을 체결한 업체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나 사무국이 해당 업체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사무국은 유형별로 4곳의 업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용역을 체결했다. 이 중 밴 라이프형 유형으로 용역을 체결한 'A업체'는 B시 건물을 임차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심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숙박시켰으며 'C업체' 대표는 'A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있다. 이에 취재기자는 지난 22일 사무국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사무국 관계자 D 모씨는 “숙박료를 지불 하지 않으면 무료 거주에 해당돼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B시와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되어 추후 문제 될 것이 없다.”라며 해당 업체와 용역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무허가 숙박 공간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법의 하나였을 뿐 불법 숙박 업체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A업체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은 B시 관계부서가 작년 9월부터 서류를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B시를 운운, A업체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 유착의혹까지 제기되는 부분이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 조정대상보도에서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고 보도된 업체는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해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① 본 업체는 2019년 6월 1일 B시와 '게스트하우스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계약서에 명시) 철도복합문화시설 2층과 철도관사 2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② 계약 후 1개월 정도면 게스트하우스 등록 관련 행정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픈을 준비했으나, B시가 임대인으로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비하지 못하는 서류 4건에 대한 처리를 B시가 지연해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 ③ 청년소상공인인 본 업체는 계약 당시 임대료(월 임대료 2,624,000원)를 일괄 납부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미룰수 없었던 사정입니다.

- ④ 본 업체가 B시 문화도시 사무국으로부터 밴라이프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없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E도자치뉴스면 위에서 2번째 기사로 위의 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사례 27 2020전북조정100 / 반론청구

반론권 부여를 위한 언론사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을 인정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 귀농귀촌협의회장인 신청인 B씨가 귀농을 선택한 사람들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이들에게 10억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귀농인들이 매입한 땅의 매도 시세차익이 크지 않고, 토지의 지목 및 현황에 대해서 귀농인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이와 관련 귀농인들이 신청인을 기소한 사건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신청인이 귀농인을 속여 폭리를 취했다고 왜곡보도를 해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귀농인이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이를 증명할 자료로 H지방검찰청 A지청의 불기소이유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A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공익보도로 작성 전 충분히 제반 사항을 조사하였고,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보도에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반론권 부여를 위한 언론사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을 인정했고 양 당사자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귀농으로 제2의 인생을 꿈꿨지만 빗더미에 앉게 됐다는 A씨 청년들의 영상인데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 A씨 귀농귀촌협의회를 만나고부터였다고 하는데, 이 귀농귀촌을 도와야 할 협의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년들.

〈동영상〉 귀농청년 : 저는 C, 저는 D, 저는 E입니다. 저희는 함께 서울에서 F도 A시로 귀농했어요. 귀농하면서 사기 맞아서 빚이 10억이에요. 화병 났습니다. 네 우울증도 왔습니다. 저는 살도 30키로나 쪼어요. 한마디로 귀농실패. [중략]

청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B씨.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인정받는 그를 귀농청년들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땅을 구입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게 했다는 B씨.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토지는 B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귀농청년 : 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저희가 산 땅의 주인은 아내 명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집을 지은 **건설에 **명의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농 청년들이 산 땅의 전 주인은 귀농귀촌협의회장 B씨의 아내, 해당 토지를 건설사 대표 G씨에게 판 뒤에 건설사 대표는 귀농 청년들에게 3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심지어 B씨는 땅 소유자인 G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건축을 맡기기도 한 상황. 그리고 이곳에 건물 네 채를 짓게 했다는 B씨. [후략]



사례 28 2020강원조정40/41 / 각 반론청구

신청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반론을 충분히 신지 않아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학교 체육코치 A씨가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수들에게 인격모독 및 욕설을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았고, 선수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는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체육코치 A씨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고, 선수들에게 인격 모독과 욕설을 하였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기사에 보도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19**년 B올림픽 C종목 금메달리스트인 모 중학교 지도자 A씨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무리한 금품 및 향응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됐고 최근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코치의 비리 행위가 알려진 것은 지도를 받아 오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부모들이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19**년 B올림픽 C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중학교 코치 A씨가 상습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선수에게 인격 모독과 욕설을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고, 선수들에게 인격 모독과 욕설을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5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나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24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사례 29 2020서울조정284·285/286·287 / 각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100억대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수십 억대 재산을 가로챘다며 손주와 손주 며느리인 신청인들을 증여 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적시한 채 신청인들이 마치 계약서 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추후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검찰 수사 결과, 손주와 손주 며느리는 보도된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심리 당시 A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재정신청사건 기각 시 추후보도를 방송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할아버지

전혀 이게 그냥 B(손자)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거 의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온 거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할아버지의 증여계약 담당자

서류가 전부 날인돼갖고 왔었어요. 저하고는 모르는 거고. [중략]



할아버지

참담하죠. 해주지도 않은 걸 해준 걸로. 그렇게. 그게 당사자가 했다는 게 더 참담한 거죠. 법 자체가 허점이 되는 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하는 거가 그게 잘못된 거죠.

C / 변호사

인감도장만 있으면 다 위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계약서도 서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서면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니까. 인감도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등기소 가게 하려면 뭐 서명, 뭐 날인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서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중략]

내레이션

모든 상황들이 할아버지가 증여의사가 없었던 걸 보여주고 있지만. 서류에는 이미 인감도장이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살면서 손자에게 돈이 아닌 다른 걸 줬으면 어땠을까? 돌아보니 후회가 남았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할아버지와 손자 간 재산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분쟁 중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에 관해서는 D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14일 위 피의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할아버지의 항고가 A고등검찰청에서 올해 1월 3일, 재정신청은 A고등법원에서 ○월 △일(판결 후 수정 : 4월 29일) 기각됨에 따라 해당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기에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A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2020***** (재정신청) 사건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들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 프로그램에 위의 보도문(본문 내용 중 ○, △는 재정신청 기각일로 반영·표기한다)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 속도로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단,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사례 30 2020서울조정1103 / 추후청구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게재하여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학생들이 집단으로 다른 학생을 보복 폭행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에 언급된 피의사실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군의 일방적인 입장만 다루어 단정적으로 보도됐고, 사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A군 폭행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게재하면 피해자인 A군의 2차 피해가 우려가 우려되어 추후보도 게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폭행 혐의에 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내용의 추후보도를 원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겠다고 답변해 기일을 속행했고 2차 심리 전 추후보도를 게재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은 취하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1년 넘게 친구들의 폭행에 시달려온 14살 A군.

가해 학생 4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A군은 어제(27일) 새벽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찾아와 때린 것입니다.

A군 피해 학생 : 너 때문에 내 친구들 다 (감옥) 들어가게 생겼다. 소년원 가게 생겼다 이런 말 하면서 폭행을... [후략]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위 A군의 27일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자로 지목된 가해 학생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모텔 내부에서의 폭행에 대하여 B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2020.2.6.)을, 이에 앞서 발생한 모텔 밖 폭행에 대해선 같은 날 기소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31 2020서울조정1840·1841·1842·1843/1844·1845·1846·1847 / 각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에 한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센터 내에서 교사의 성추행, 폭력, 약물강제 복용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인 A센터에서는 소속 지도교사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A센터의 소속 복지사인 신청인 2와 신청인 3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요지

- 신청인 센터에서 야간지도교사의 개인 일탈행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직무정지 조치 및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 해당 센터에서 피해 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실시했다.
- 해당 센터에서 아동 폭행, 학대, 가혹행위 및 약물강제 복용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사 2명(신청인 2, 3)을 비롯하여 센터 및 구성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센터 퇴소자 B : 청소가 잘 안되어 있거나 그러면 강당으로 모이라 그래요. 모이면은 선생님 앞에서 1배, 2배 숫자 세고 108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50명 중에 한 명이 10배 정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개 대놓고 지목해서 재 때문에 10개 추가라고 그러면 다들 개만 원망하죠.

A센터 전 직원 : 그 아이가 약을 먹고 운동장에서 허공을 멍하니 동공이 풀렸는데 허공에 멍한 채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너무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놀라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약을 먹고 멍해요’ 그러는 거예요. [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약물강제 복용 여부)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1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방송 프로그램에서 위의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단, 방송 시에는 위의 보도문 중 괄호 안의 멘트를 삭제한다.
-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 게시글 상단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다시보기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사례 32 2020충북조정41·42 / 추후·손배청구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을 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 및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인 A교사는 학부모 측 고발사건 대부분이 혐의 없음 또는 각하로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됐음을 들어 추후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A씨는 학생들을 자료실로 보내 필기를 하게 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대한 바 없다.
- A씨와 관련된 다수의 혐의가 보도된 후 대부분의 형사절차가 혐의없음으로 처분 확정됐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추후보도에 관하여는 양측 협의 여지 있으므로 보도문안을 협의하되, 손해배상청구는 신청인이 양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B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갓 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들을 학대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 [중략]

학부모들은 수업시간에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A교사가 필기구를 가지고 빈 교실(자료실)로 보내 반복적으로 필기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말을 잘 듣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고 주장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의혹으로 교육당국 및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확인 결과, 해당 교사 A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말을 잘 듣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거나 “필기구로 아이의 얼굴을 찔러 멍이 들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성적인 학대까지 있었다”는 C학생 학부모 측 고발건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19일 및 같은 달 26일에 각각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각하(상습감금 등 포함)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C학생 학부모가 같은 취지로 2020년 고등검찰청에 재차 항고한 고발건의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및 항고 기각에 이어 2020년 11월 18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처분이 확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회>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위에 따른 게재 시, 처음 48시간 동안 위의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사례 33 2020서울조정87 / 손해청구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만을 근거로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게시글을 인용하여, 신청인 1 회사의 팀장급 직원인 신청인 2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인 신청인 3을 성추행한데 이어 자신을 말린 부하 직원을 폭행하였음에도, 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2에게 1개월 정직에 보너스 삭감이라는 징계만을 내렸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보도내용 중 성추행 논란은 사실이 아닌데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기업 이미지와 해당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취재원의 신뢰도가 낮고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사 열람·검색 차단 및 신청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의 협의 결과,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및 신청인 2, 3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해당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 2. 및 신청인 3.에게 각각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4 2020서울조정307·308, 2020서울조정309·310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

지역 '맛집'소개 프로그램에서 식사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과 기사 수정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들은 지역 '맛집'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평소에 체구가 커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데 동의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도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은 첨부하지 않아 수록하지 않음

■ 조정결과

중재부는 양 당사자가 양보하여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권유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유감표명, 기사수정과 함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총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유감표명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본 합의로써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사 수정사항

피신청인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초상이 화면전체에 단독으로 노출된 부분은 열람·검색 차단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사례 35 2020서울조정442·443 / 정정·손배청구

지자체 체육회장 후보자인 신청인을 여러 차례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반론을 충분히 실지 않았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도체육회장 후보였던 B씨가 업무추진비 환원 약속,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등과 관련하여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는 취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A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급받은 업무수행경비를 선수나 감독을 위해 사용했으며 기부활동을 하는 등 헌신해왔는데도, 피신청인이 수차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육회장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 보도의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업무추진비는 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성으로 지급된 업무수행경비는 선수나 감독 격려비 등에 지원했다.
- 신청인은 개인명의, 회사, 본인이 회장을 역임한 협회 등을 통해 거액을 기부했다.
- 해당 보도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A도체육회장선거에 낙선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악영향을 미친 데 대해 사과한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도체육회 취재내용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보도에 악의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기사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A도 체육회 민선 1기 A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A도 체육회장 후보자 B씨가 거짓 기자회견 논란에 휩싸였다. [중략]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 “2011년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선수육성기금으로 전액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실천에 옮겼느냐”는 질문이 이어 졌다.

이에 B후보자는 “차량은 물론 기사를 제공 받지도 않았고 법인 카드를 쓴적도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350만원은 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정도는 총무과장이 관리했고 나머지는 선수나 이렇게... 지원했다”며 “그 돈을 저희 회사에서 전국체전때 전부 3천만 원 2천만 원 해가지고 전부 체전 격려비로 환원했다”고 답했다.

또 “저는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체육회로 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돈을 받아본 적 이 없다”며 “판공비도 선수를 위해 썼지만 그 돈 역시 저희회사에서 전국체전 격려비로 환원이라기 보다는... 대신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 결과 2011년 7월 1일 부터 매월 350만원이 정기적으로 B후보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고 2014년 7월 30일 까지 37개월간 총 1억2천95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전액 환원했다는 업무추진비는 간혹 체전 참가시에 따라 A전문건설협회 또는 C건설 명의로 총 1억2천950만원중 절반 정도만 입금된 사실이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더욱 큰 문제는 도 상임부회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원이 A전문건설협회 또는 C건설 명의로 환원이 이뤄져 이들 법인의 지출명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보도 2]

[전략] 취재진은 B후보자 개인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회사를 통해 환원했다는 발언에 대한 확인 결과 도체육회 체육육성기금 후원자의 명단에서 ‘전문건설협회(B씨)’이 5회에 걸쳐 3400만원, ‘C건설(B씨)’ 1회 2000만원, ‘B씨’ 1회 2000만원 이 기탁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략]

B후보자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6일 ‘B씨 A도 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에 대한 본지의 27일 ‘B씨 A도 체육회장 후보 거짓 기자회견 파문’ 보도에 대해 해명성 글을 올렸다.

자신은 A도나 대한체육회에서 낙점 받지 않은 후보라며 도 체육회로 부터 어떤것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업무추진비가 아닌 업무수행경비명목으로 개인통장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후략]

[보도 3]

[전략] B후보자는 이 자리 에서 “자신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 하는 동안 도체육회로 부터 차량을 비롯한 운전기사의 도움을 일체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중략]

또 B후보자가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재임기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 이용이 있었다고 밝혀 또 다른 거짓말 기자회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A도 체육회는 취재진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에서 B후보자가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A도 체육회 운영자금으로 업무용 그랜저 차량을 구입했고 이 차량이 구입된 직후 3일만에 운전기사를 신규채용 하고 B후보자가 이 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후략]

[보도 4]

[전략] 이에 취재진이 B후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에 이어 3일 추가로 A도 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B후보자의 지난 2011년 7월 1일 부터 이후 3년 간의 재임기간 동안 구체적인 체육기금 기탁 내역이 확인 됐다. [중략]

특히 B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목록에서 기부자 B씨, 입금내역 없음, B씨 영수증 발행, 이라는 내용이 발견돼 기부자(B씨)와 영수증(B씨)은 확인 됐는데 정작 입금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 됐다.

결국 B후보가 밝힌 1억 2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액 환원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인과 전혀 다른 개체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낸 기부금을 마치 본인이 낸 것처럼 기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자랑하듯 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후략]

[보도 5]

[전략] B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 당시 지급 받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회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 지고 있다.

또 이날 자신은 도 체육회로 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임 중에 도 체육회 운영비로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신규채용해 이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 지면서 후보자격 논란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후략]

[보도 6]

민선1기 A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업무추진비 기부 진위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이 받은 업무추진비를 회사가 대신 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절차적 적법성 의혹으로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B후보는 지난 1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한 2011년 7월 1일 부터 3년간 자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회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 체육회의 기부금 자료 제공이 부신했다며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했다.

B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 자료 기탁금은 4000만원 인데 비해 1400만원이 늘어난 5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 중 'C건설/B씨'로 입금된 금액은 2회 3000천만 원, 'C건설' 2회 2100만 원, 'B씨' 1회 300만원이 재임중에 기탁한 기부금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이 받은 업무추진비를 회사 명의로 대신 낸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언론사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A도체육회장 후보였던 B씨가 업무추진비 환원 약속,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등 관련하여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전 후보는 A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받은 직책성 업무수행경비를 선수 격려금,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했고, 개인·회사 명의로 체육계에 돈을 기부해왔으며, A도체육회로부터 상임부회장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의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6 2020서울조정472, 2020서울조정622 (병합) / 각 손해청구

코로나 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검사를 받는 신청인 1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취지

부부 사이인 신청인들은 보도 사진에 차량 유리에 부착한 아파트 스티커가 촬영되었는데, 스티커에 신청인들의 핸드폰 번호, 아파트 동 호수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총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중재부는 손해배상 총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7 2020대전조정8/9 / 각 손해청구

‘다큐 에세이’ 프로그램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줬다는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다큐 에세이’ 프로그램에서 에코파티 현장을 보도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긴급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하면서 개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심리가 개최되기 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정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내레이션 : 예술가들도 참여해 에코파티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몸과 정신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진짜 건강한 삶이라고 말하는 A원장. 에코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먹거리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하는군요. [후략]

사례 38 2020서울조정564/623, 2020서울조정565/624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

보도 내용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를 방송하여 업체의 상호권 및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사과보도,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특정 종교단체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종교와 명칭이 유사한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와 제품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회사는 B종교와 무관한데도 마치 B종교단체가 운영하고 교인들이 주소비계층인 회사인 것처럼 홈페이지와 제품들을 노출해 오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영업 활동이 위축되어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져 상호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정보도와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방송 중 자료화면으로 홈페이지 및 제품이 보도된 A주식회사는 B종교와 무관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낸 것은 명백한 과실로 다시보기에서 해당 내용을 열람 및 검색 차단하였고 정정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고 손해배상금을 6백만원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력] C씨 : B종교단체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의 수요는, 다 그 소비계층이 어디냐면 B종교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자 : 안으로 쥐어짜는 그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C씨 :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계속 푼돈을 얻어내는 방식.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고내용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종교단체에 대해 방송하며 D도 소재 면류·소스류 제조업체인 A주식회사의 제품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E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A주식회사는 B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A주식회사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방법

- 방송 프로그램 방영시간대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재방송하되, 신청인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하고 방송하며, 방송 도입부에 위의 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배경화면에 계속해서 노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이 검색되는 한, 다시보기 영상 도입부에도 위의 정정보도문 영상을 삽입하며, 해당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과 관련한 부분은 계속해서 삭제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들은 위 조치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9 2020서울조정666·667 / 정정·손배청구

근거 없이 신청인 업체를 비윤리적인 회사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제품생산 중단명령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업체는 식약처가 B제품 중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회수·판매중지를 한 것일 뿐,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고, 회수 대상 제품을 대부분 회수해 폐기했으며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인이 비윤리적 회사라는 취지로 보도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7,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식약처는 A업체에 대하여 금속성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명한 것이지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다.
- A업체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했고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은 없었다.
- 조치 대상 제품과는 무관한 제품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중재부가 제시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사수정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않아 중재부에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사수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5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네이버쇼핑에서 1만277명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식품회사인 'A'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미 구매했거나 복용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조치에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로 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업체가 판매한 건강식품 'B'(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에 인체에 해로운 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로 적발돼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명령과 함께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략]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판매를 위한 홍보에만 치중하고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비윤리적인 가공식품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수정 전 원본 기사)에서 A업체가 식약처로부터 'B' 제품생산 중단과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보상조치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는 등 제품의 심각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윤리적 회사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B' 제품 중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의 회수·판매중지를 한 것일 뿐,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A업체는 “물류센터와 거래처에 있는 회수 대상 제품을 대부분 회수해 3월 27일 C시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했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텍스트 기사목록에 위 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게재 방식대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포함된 사진 중 'B'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 이미지를 삭제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0 2020서울조정843·844, 2020서울조정845·846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

면 마스크 교체용 필터가 불량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업체의 쇼핑몰 및 제품 이미지를 사용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면 마스크 교체용 필터의 성능이 낮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제품 이미지를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업체는 성능에 문제가 없는 마스크 필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쇼핑몰 매출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업체는 분집포집률 98.6%의 kf94마스크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마스크용 필터를 판매하고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송부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인 제품 관련 영상을 모두 수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면 마스크에 부착해 쓰는 교체용 필터, 최근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B언론사 취재 결과, 상당수 제품의 성능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도 과장광고 사실을 실토했는데, 식약처는 관리 허점을 인정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KF94 마스크 필터 원단이라고 내세운 국내 제품의 차단율은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50%대였습니다. [중략]



국내 정식 마스크 업체에서 만들었다는 KF94 마스크 교체용 필터는 85%를 기록했습니다. 면 마스크에 붙여 쓰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차단율 95%라는 이 필터를 면 마스크에 부착해 측정해본 결과, 55%가 나왔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1 2020광주조정46·47/48·49 /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의 조정신청이 불성립결정된 것이 중재부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조정불성립’ 판단을 하여 요구를 관철 시키는데 실패했다며, 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피신청인의 태도로 인해 불성립된 것인데 마치 중재부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불성립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피신청인의 태도에 의해 불성립된 것이지 신청인의 요청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 조정 중 신청인들을 이석시킨 후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조정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심리 당시 조정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불성립된 사건을 마치 언론중재위원회가 기각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 정정보도 게재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조정대상보도

황제독감 A시의회 4인방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언론중재부의 판단으로 실패했다. [중략]

본지가 제보자 보호, 수사증거자료 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4인을 중재부에서 배석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고, 중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지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중재불성립’ 판단을 함에 따라 황제독감 4인방은 정정보도, 배상 청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들이 본지에 정정보도와 4인이 함께 2천만원, B의원이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중재부는 본지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들이 요청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황제독감 A시의회 4인방이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조정불성립’ 판단을 함에 따라 황제독감 4인방은 정정보도, 배상 청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들이 요청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B의원이 본지 5월 6일자 1면 “나는 C당 D시의원에 협박당했다” 제목의 보도를 대상으로 조정 신청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언론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광주중재부)가 E, F, G, B 등 4명의 A 시의원들이 본 신문의 기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과 B시의원이 본 신문의 기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것은 피신청인인 본 신문이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의 경우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신문이 제시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받아들여 해당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들의 조정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위 보도에서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했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보도 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문 1면 우측 상단에 위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SNS 전광판'섹션 위에서 2번째 기사로 위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 호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2 2020서울조정1899 / 손해청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신청인들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른 어머니와 유치원생 자녀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들른 신청인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사진 및 사진에 달린 캡션을 통해 신청인들의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점, 여러 매체에 해당 사진을 제공한 점, 유치원복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사정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3 2020서울조정1923 / 손해청구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과 기사수정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사의 통신상품 연체료를 받는 추심업체 B사의 불법추심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인 소속 회사가 보도내용과 무관하고, 보도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청인의 사진을 블라인드 처리 없이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정대상기사에 삽입된 사진 중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속한 C사는 A사가 출자해 운영하는 고객센터로 보도내용과 무관하지 않고, 신청인의 사진이 보도에 필수적이었으며, 해당 사진은 홍보용 보도자료 사진으로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보도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보도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청인 초상 및 성명이 블라인드 처리 없이 게재된 점, 피신청인의 피해구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 2백만 원 지급과 기사수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조정대상보도

A사 통신상품 연체료를 대신 받아 내는 <B사>가 고객의 이동전화 이용정지일을 마음대로 앞당겼음을 스스로 인정한 문건이 나왔다. 이 추심업체가 A사의 연체료를 불법추심한 의혹이 있다는 7월 7일자 본지 보도(A사 이동전화 연체료 불법 추심 의혹)를 추가로 뒷받침하는 자료다. 문건에는 추심을 맡긴 A사가 ‘이용정지일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담겨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기사 수정사항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초상 및 성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하고,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이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4 2020서울조정2283 / 손해청구

사기혐의로 고소된 P2P 업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금흐름 도표에 기재된 신청인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한 데 대해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P2P 업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금흐름 도표에 기재된 신청인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P2P업체 A의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마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실명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재부에서는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명을 삭제 처리하는 것과 함께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상장폐지 위기의 B사가 주식회사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B사가 투자한 회사다. 또한 A사 채권자 소송인단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사는 이자 지급을 줄줄이 연체해 디폴트 직전이라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우려다. A사는 2017년 8월 설립된 대출 중개 목적의 P2P(peer to peer) 플랫폼 업체다. [중략]

그러나 A사가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 상폐 위기인 C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A사가 C사의 횡령·배임 금액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펀딩 자금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경영권과 관련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실명을 삭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에게 금 삼십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5 2020서울조정2294·2295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인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 학비, 월세 송금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자녀의 유학 체류비 관련 논란에 해명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자녀의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녀 유학 관련 악의적인 의혹 제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와 함께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자료내역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부처 장관 후보자인 B씨는 자신의 자녀와 관련한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심리에서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송금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자료제출을 위해 기일을 속행했고, 2차 심리에서 자료가 추가 제출되었다.

피신청인은 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부 자료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보도 게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국회에 학비 및 월세 관련 송금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했으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B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B후보자는 이날 아들 유학 월세 580만원과 관련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학교 친구 집에 방 1개를 ‘룸셰어(공유)’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다시 해명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부처 장관 후보자 B가 본인과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고,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 A부처 장관 B는 당시 아들과 관련한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문 A6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 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6 2020부산조정51 / 손해청구청구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는 일반 참석자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혁신도시 개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로서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과 음성이 담긴 영상이 모자이크나 변조 처리 없이 보도되어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신원이 공개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개인의 재정상황이 공개되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청회에 혁신도시 위원으로 참석했고 공공장소에서 공식적인 발언기회를 얻어 질문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뉴스 취재방식을 따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청인이 연락하여 즉시 인터넷과 유튜브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촬영 부분을 삭제 조치했다고 알렸다.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보도 이후의 조치 등 제반 사정 및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시간과 비용소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을 통해 원만히 화해할 것을 권고, 조정액으로 1백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이처럼 B대기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B기업 측은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만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A혁신도시 상인

B기업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한 달에 500만원씩 나가고 있어 집안에 파탄 나게 생겼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백만(1,000,000)원을 지급한다.

제 5 장

기사 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제5장 기사 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사례 47 2020서울조정266·267/268·269 / 각 정정·손배청구

온라인상 공개된 영상을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데 대해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찌개류 음식을 함께 떠먹는 식탁문화가 전염병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하면서, 소위 ‘먹방’ 유튜브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과 음식을 나눠먹는 유튜브 영상을 함께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튜브인 본인들의 영상을 동의 없이 노출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고 해당 보도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정정보도 및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조정대상보도에서 보도한 내용과 영상의 인물은 무관하며 해당 유튜브 영상은 사전동의 없이 사용되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한 것이지 신청인 개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및 기사를 열람·검색 차단하는 조정안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및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및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해당 보도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사례 48 2020광주조정20/21 / 각 손해청구

신청인의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기사화하면서 사망 이유를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친의 사망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식 투자 실패 때문이라고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친의 사망 이유를 위법행위를 통해 입수하였고, 고인의 사망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것인데 주식투자 실패라고 단정 지어 보도했으며 익명화했다고는 하나 보도에 지인들로부터 특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피신청인은 해당 기사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을 인정한다며 이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기사의 열람 및 검색차단을 요구했고 이를 피신청인이 수용하여 기사를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를 pdf 파일에서 삭제한다.



사례 49 2020서울조정1435 / 손배청구

3년 전 동의 없이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다시 게재한 보도에 대해 기사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모 대학 총장의 교수 채용 대가성 금품 수수에 관해 3년 전 보도한 인터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3년 전 진행된 인터뷰 기사는 신청인과 취재 기자와의 사적 대화를 보도한 것으로 당시에도 신청인이 항의하여 삭제한 바 있는데, 또 다시 동의 없이 해당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게재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에 중재부는 기사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기사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을 차단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해당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50 2020서울조정1431 / 손배청구

제주의 해수욕장을 걷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한 데 대해 블로그, SNS 등에 해당 사진이 게재될 경우 피신청인이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여행객들의 방역 지침과 현지인들의 불안감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수욕장을 걷고 있던 신청인들의 일부 모자이크된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해당 사진은 동의 없이 촬영 및 보도되었고, 관광 후 차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잠시 탈착한 상태였는데 이를 마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여 기사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했으며 추후 사진 삭제와 같은 피해구제 노력을 했으므로 금전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사진이 이미 삭제되었고 초상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질의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블로그나 카페의 펄글 등에 신청인들의 사진이 게재된 경우 이를 삭제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와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돼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성산일출봉 탐방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송악산과 함덕해수욕장 등 야외 관광지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보다 착용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이 보였다.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A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광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펼글 조치사항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에 조정대상기사의 신청인들 사진이 게재된 경우, 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신청인에게 게시물을 특정하여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등에게 조정대상기사에서도 사진이 삭제되었음을 명시하여 신청인들의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한다.

사례 51 2020서울조정1612/1613 / 각 손해청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집값 담합 관련 단속을 피해 영업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변조한 중개사의 음성과 사무소 내부를 공개한 방송에 대해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직권결정을 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정부의 집값 담합 현장단속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미리 알고 이를 피해 전화로 영업을 계속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개사인 신청인의 음성과 부동산 사무소 내부를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목소리와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3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속 대응방법에 대한 것으로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영업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빈 부동산 내부를 촬영한 것이지 신청인을 특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음성이 변조되었으나 주변인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었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조정대상기사의 검색·열람을 차단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경제면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가 열람 및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줌 등 검색 제휴된 포털사이트에도 각 조정대상기사가 열람 및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사례 52 2020전북조정77 / 정정청구

기사와 함께 ‘오리발’이미지를 게재해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한 데 대해 이미지 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의회 B의장이 시의회 의장단 선거 전날과 당일에 부인 및 시의원 등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으며, 식비는 모두 동석한 일반인이 계산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B의장은 이틀 모두 음식점에서 식사 후 직접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부인은 동석하지 않았는데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 B의장은 16일과 17일 혁신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본인이 계산하였고, 신청인의 부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심리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사 중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오리발’ 사진 삭제, 후속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또 선거 직후 음식점에서 ‘불륜 스캔들’에 휩싸여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해당 여성의원(현 C정당)과 또다른 C당 소속 여성의원인 무소속 의원들과 선거 승리를 자축하는 ‘만찬파티’를 즐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선거 전후 밀실담합을 위한 화합과 만찬파티에는 일반인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각종 오해의 소지를 자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6시 D혁신도시의 한 음식점에는

B의장과 B의장의 부인, E, F, G의원을 비롯해 음식값을 지불한 일반인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 17일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인 오후 6시 같은 음식점에는 B의장과 B의장의 부인을 비롯해 전날 회합했던 무소속 의원들과 ‘불륜 스캔들’로 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여성의원, 그리고 C당 소속의 H의원이 참석해 축하만찬을 즐겼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16일 B의장 외 3명의 의원과 B의장 부인이 D혁신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일반인이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A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구성된 날인 17일 역시 같은 음식점에서 B의장 외 6명과 B의장 부인이 식사한 후 전날 식사비를 계산했던 동일인이 음식값을 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들 모두 B의장이 음식값을 직접 지불하였으며 따라서 일반인이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의장의 부인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한 7. 28.자후속 기사 중 삽입된 오리발 사진은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부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처리, 음영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53 2020서울조정2726·2727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본문을 수정하고 기사 하단에 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A가 B지자체 식품 알레르기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으며, 업체의 생산 제품이 알레르기 발현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는 적법한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폄하하였고, 선정된 제품의 뒷면에 표기된 알레르기 예방 문구는 예방적 알레르기 표시에 불과한데도 마치 알레르기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업체는 적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특정 정치인과의 연루설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의 추측에 불과하다.
- 사업에 선정된 신청인 단체의 생산 제품의 제품 뒷면에 표시된 알레르기 예방 문구는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예방적 알레르기 표시일 뿐,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 사업 공모에서 제품의 품목에 대해 조건이 제시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하여 공모에 참여하거나 광고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심리 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기사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지방의 한 지역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학교급식에 무리하게 특정 제품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숱한 비판 끝에 결국 전면 철회됐다. 지역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파문으로 인해 여전히 학교급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선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그러면서 이 사업 ‘정제’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가장 큰 의혹은 선정과정이었다. 6월에 발표된 업체 공모 조건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 조건 이외에도 섭취방법을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 타 건강기능식품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중략]

제품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했다. A업체 제품은 버섯이 포함된 가루 형태로, 포장지 뒷면에는 현미가루, 버섯 균사체, 건조 표고버섯 플레이크 등 원재료명이 표기됐다. 문제는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제품 포장지에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확인 후 섭취하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영양(교)사들을 기함하게 했다. ‘알레르기 억제사업’이라면서 알레르기 발현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공한 셈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표기를 쓰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이마저도 없는 일반 ‘기타 가공품’이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기사 수정사항

수정 전	수정 후
기본 조건 이외에도 섭취방법을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 타 건강기능식품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기본 조건 이외에도 섭취방법을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 의혹을 제공했다.
신청인 제품 사진	삭제
‘알레르기 억제사업’이라면서 알레르기 발현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공한 셈이다.	삭제
게다가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표기를 쓰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이마저도 없는 일반 ‘기타 가공품’이었다.	→ 삭제
B지자체 C학교 영양교사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B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며	B지자체 C학교 영양교사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B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알레르기 억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며
B지자체 D학교 영양교사는 “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학교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막아내려고 한 주체는 영양(교)사들이었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깨달았다”며	B지자체 D학교 영양교사는 “ 알레르기 억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학교로 납품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막아내려고 한 주체는 영양(교)사들이었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깨달았다”며



-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조정대상기사와 구분하여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수정된 것입니다.」를 추가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가 위에 따라 수정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사례 54 2020서울조정2654 / 정정청구

미인선발대회 참가자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여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미인선발대회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면서 제목에 ‘열정적인 드레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드레스’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하여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해당 보도의 제목에 오류가 있어 제목을 <2020 B대회 A 열정적인 드레스>로 수정한다. 기사에 게재한 A씨의 사진은 본인이 게재를 원하지 않아 삭제한다.

■ 조정결과

심리가 개최되기 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을 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제 6 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55 2020서울조정20·21 / 정정·손배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이름만 빼고 보도한 데 대해 언론사의 취재·편집의 자유와 허위보도가 아님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통신사인 피신청인은 A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과 후보들의 최근 행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통신사로서 영향이 큰 피신청인이 A시갑 7명의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본인의 이름만 빼고 보도하여 여론조사,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피신청인은 의도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 중 신청인만 제외하고 보도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을 부각하여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취재·편집의 자유에 속하고, 예비후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비후보자 중 한 명인 신청인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야권에서는 출마 희망자들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중략]

B당에서는 A도당 C위원장 직무대행이 출마할 예정이다.

D당에서는 A도당 F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합류했다.

무소속인 G공인회계사는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 이어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A대 H교수는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당 선택을 놓고 고심 중이다. [후략]



사례 56 2020서울조정129 / 반론청구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상당 분량 보도되었음에도 이를 요약한 형태의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기각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A국회의원이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직 공무원을 역임하는 동안 본인, 배우자, 아들들의 명의로 각각 부동산을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직위나 직책을 이용한 바 없는데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돼 정치인으로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A의원은 본인, 배우자, 두 아들 명의로 각각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가 아니며 직위나 직책을 이용한 점이 전혀 없다.
- 강남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수 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A의원만 의도적으로 취재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에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는 해당 보도에 포함된 신청인의 반론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의 땅입니다. 석촌역에서 걸어서 5분 이른바 더블역세권입니다. 1978년 B부처 공무원시절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실 인근의 땅을 산 겁니다. 현재 시세는 낮게 잡아도 20억 원 정도.

실거래가 3.3제곱미터기준 1억 원을 넘었다는 아파트는 본인 명의, 올해 입주 예정인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배우자인 아내 명의입니다. [중략]

A의원은 B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수십 년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깊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중략]

C / D단체 국장

2014년 말을 기해서 재건축단지에 대한 특혜 조치 법안이 하나가 통과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재건축단지가 다시 어떤 가치도 오르고 사업도 활발해지는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더라고요. [후략]



사례 57 2020서울조정250, 2020서울조정251 (병합) / 각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와 법적 분쟁 중인 전 회장을 신청인의 대표자로 보도한 데 대해 PR보도 게재와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1은 A단체 회장의 인터뷰 보도를 게재하였고, 피신청인 2는 같은 인물이 관련 소송의 종료로 새로 A단체의 회장 임기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단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단체 회장이라고 보도된 B씨는 전 회장으로,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C단체와 D협회는 법정단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통합 창립총회를 열고 A단체를 창립, 1대 회장으로 B씨를, 2대 회장으로 E씨를 선출했다.
- A단체 전 회장 B씨의 임기는 만료되었으며 현재 2대 회장 E씨가 재임 중이다.
-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B씨가 A단체의 회장 임기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1은 신청인 단체의 회장을 인터뷰한 것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C단체의 회장 B씨를 인터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B씨를 현 회장으로 인터뷰하여 보도한 언론사는 현 회장 E씨의 인터뷰를 담은 PR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 단체 전 회장이 임기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기사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2020서울조정250]

비영리민간단체 C단체의 B회장이 D협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후략]

[2020서울조정251]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인터넷 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한다.

PR보도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비즈면에 신청인측 입장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되 그 분량은 조정대상기사 보도 분량의 70% 이상으로 하고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네이버, 다음)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58 2020서울조정399 / 손해청구

신청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사과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정당 소속의 한 의원이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분명한 찬스니까”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정당은 소속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은 “지금 분노에 차있으니까”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단순 실수이고, 방송 이후 충분히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사과 방송에 대해 수용의사가 있으나 보도방법과 관련해 피신청인과의 합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보도 내용, 시간 등에 대해 양보하여 합의할 것을 권유, 양 당사자가 보도방법을 조율하여 사과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정당 B의원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A정당 C의원

“그러게. 아침에 내가 서있는데 경적 울리고 헤드라이트 하는 게 4년 전 보다 훨씬 많아졌어.”

A정당 B의원

“지금 이게 분노에 차있으니까…”

A정당 C의원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하면 된다고...”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에서 A정당 소속의 한 의원이 “지금 분노에 차있으니까”라고 발언한 내용을 “지금 이게 분명한 찬스니까...”라고 보도한데 대해 당사자 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면에 위의 내용에 따라 보도된 영상을 게재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유튜브, 네이버, 다음, 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에 따라 이행한 영상을 전송한다.



사례 59 2020경남조정51 / 반론청구

학교 몰카 범죄 용의자의 특정 직군을 명시한 보도에 동일 직군인 신청인이 반론청구를 한 데 대해 보도와 신청인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이 해당 학교 40대 체육교사였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체육교사'라는 특정 직군을 명시한 것은 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이라는 보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현직교사', '교사' 등으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도 '체육교사'라고 보도해 해당 직군의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키고 신청인을 포함한 체육교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조정대상보도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인의 특정 직군인 '체육교사'를 적시해 피해를 입혔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보도 내용 중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그 보도 내용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불법촬영카메라는 지난달 24일 A도 B시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소를 하다 발견됐는데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찾고보니 놀랍게도 범인은 이 학교의 40대 체육교사였습니다. 게다가 설치된 장비는 고화질의 방수기능까지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후략]

사례 60 2020경기조정285 / 정정청구

주민대표위원장의 ‘갑질’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해당 반론보도를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게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인 A주민대표위원장이 주민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고리이자를 소개하여 이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운영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위원해임안을 결의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고소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 협조로 특판상품을 개설한 것이며, 대표위원해임안을 결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의한 것인데도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이 주민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건은 총 3건이다.
- 고리이자를 소개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 협조로 특판상품을 개설한 것이다.
-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이의제기 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발의’한 것이며 위원장 단독 발의가 아닌 공동 발의였다.
- 카톡이나 문자로 가짜계약을 작성하여 대위변제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주민대표회의가 아닌 타 집단에서 안내한 것이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전해왔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 게재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해당 반론보도는 400여명 주민들의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게시하도록 합의했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B시 주거환경개선사업 C지구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지나친 갑질에 분노하여, 주민 일동이 A위원장 갑질 사례를 알리고, A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청원서를 B시에 보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B시는 일주일 만에 토지및소유주 주민 10%의 동의하에 직무정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회신해 왔다고 전해왔다. C지구 주민들이 전해주는 A위원장의 갑질 사례는 기가 막힐 정도로 다양하다.

고소를 당한 후, 이미 무혐의 처리를 받은 D주민은 “A위원장은 주민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안나온다길래 그걸 물어보러 갔다가 소리좀 쳤다고, 경찰을 부르지 않나,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1-2년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A위원장은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줄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협박용으로 계속 고소를 난발을 하고 있습니다.”고 전해왔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민대표위원장이 주민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E금고의 5.5%의 고리이자를 소개하여 이주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운영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위원해임안을 결의하는 등 직권 남용하였고, 또한 주민들에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들은 호적을 분리시켜 가짜계약을 작성하여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카톡이나 문자로 전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주민 대상으로 부득이 고소고발한 것은 주민대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올려와 고성과 물품을 훼손하는 등으로 업무방해죄 ‘50만원 벌금형’ 사법기관 판결로 종료된 1건과 400 여명이 모인 카톡방에 위원장을 머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2건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5.5%의 고리이자를 소개하게 된 것은 일부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금융기관 협조 하에 특관상품을 개설한 것이었으며,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이의제기 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결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결의’ 된 것이 아니라 ‘발의’된 것이며 위원장 단독발의가 아닌 공동발의형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로 가짜계약서 작성하여 대위변제를 받으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주민대표회의에 반하는 집단에서 안내한 행태를 주민대표회의에서 한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행정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위의 보도문에서 언급된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카카오톡> *** 개최방에도 위의 보도문을 게시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



사례 61 2020서울조정2084·2085·2086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과 소송 중인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기고문을 게재한 데 대해 반박 기고문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A공사와 B시민단체 간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원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다룬 기고문에서,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공사가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해당 항소심 재판은 신청인과 B단체 양측 모두 항소한 것이고,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판결에 따라 건설 원가를 공개할 예정인데도 B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 A공사가 건설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허위 기고문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반론보도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해당 항소심 재판은 A공사와 B시민단체 양측 모두 항소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A공사는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
- A공사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건설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반박 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를 신청인이 수용하여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B시민단체와 A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A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기고문 게재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신청인 측의 반박, 해명 등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하되, 분량, 제목 크기, 게재 위치 등은 이 사건 조정대상 기고와 동일하게 하고, 신청인의 기고 내용에 피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위의 기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고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기고문의 제목과 링크를 삽입하도록 한다.



사례 62 2020서울조정2681/2682 / 각 정정청구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의 인터뷰를 담은 후속보도를 신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접 호텔을 운영하려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방송에서 인터뷰한 인물들로 인해 호텔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것처럼 보도하여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신청인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4인은 관련 호텔을 무단점유하여 사익을 취하고 있다.
- 인터뷰한 4인 중 3인은 시행사, 운영사, 관공서 등으로부터 불법 점유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 중이다.
- 방송에 사용된 영상 및 방송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보도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영상 수정 및 반론 게재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적인 보도게재는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심리 중 피신청인이 입장을 바꿔 후속보도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신청인이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사회자 : 매달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판매된 호텔 분양권, 이 말에 호텔 객실을 분양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데.

A : 준공하고 3개월 운영해서 첫 수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날부터 단 1원도 수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매달 꼬박꼬박 백만원 가량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B : 저는 1억 7천짜리 1억 대출 받았죠. 이자 나오는 거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략]

■ 조정성립 사항

후속보도 게재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동일 프로그램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후속보도를 한다.
- 신청인들의 반론 인터뷰를 반드시 포함한다.
- 이 사건 호텔 관련 다양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 방송 분량은 기존 조정대상방송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록

부록.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정

(1981. 3. 31. ~ 2020.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1981	44	9			12 (5)	1	2	2	18	39.0	
1982	50	19			19 (5)		2	4	6	58.3	
1983	71	21			22 (7)	1	1	8	18	52.2	
1984	54	12			29 (8)	3		5	5	49.0	
1985	59	12			28 (5)	4		7	8	43.6	
1986	49	14			10 (2)	1		11	13	56.3	
1987	47	10			9 (4)	1		2	25	34.8	
1988	55	16			12 (5)		1	13	13	63.0	
1989	121	29			35 (10)		6	21	30	52.2	
1990	159	42			43 (10)	1	2	40	31	59.0	
1991	220	52			48 (9)	3	1	43	73	48.1	
1992	381	81			79 (12)	19		107	95	55.2	
1993	423	132			96 (16)	8	2	84	101	56.2	
1994	541	162			127 (10)	7		128	117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124	11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137	102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108	115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106	144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92	145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156	14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133	116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101	122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158	11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148	107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160	123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250	163	60.6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257	131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237	113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361	214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891	240	79.2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680	271	71.3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787	185	71.5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884	205	77.6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5,420	930	88.7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633	271	77.9
2016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049	317	72.3
2017	3,230	915	72	61		488	(6)	122	86	1,234	252	73.7
2018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2019	3,544	1,129	121	100	(6)	734	(26)	279	65	932	184	69.2
2020	3,924	1,245	166	99		891	(11)	275	34	1,029	185	67.8
계	64,759	15,153	1,622	1,161	(56)	8,634	(377)	2,107	438	29,806	5,838	75.6
	100.0	23.4	2.5	1.8		13.3		3.3	0.7	46.0	9.0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중재

(2005. 7. 28. ~ 2020.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5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2015	26	26				
2016	13	13				
2017	1		1			
2018	2		2			
2019						
계	634	573	51	1		9
	100%	90.4%	8.0%	0.2%		1.4%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주 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397-3114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홈페이지 : www.pac.or.kr
- 블 로그 : pacblog.k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역

부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 MBC 8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1, 8083 / FAX 043) 286-8084

전북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빌딩 405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

(5145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0, 1787 / FAX 055) 263-1769

제주

(63223)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01 다모양 빌딩 3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20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제작 2021년 5월 31일

발행 2021년 5월 31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주)타라그래픽스 02)569-1472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 사례집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